

2016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2016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2015

2016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2017

2018

2019

2015

2016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2017

2018

2019

CONTENTS

1

디자인법률자문단 및 수행기관 소개
대한민국 디자인 법률브레인 004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인사말 006

디자인법률자문단 소개 007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008

광주 및 호남 지역 / (재)광주디자인센터 009

대구 및 경북 지역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010

부산 및 경남 지역 / (재)부산디자인센터 011

2

법률자문 사례(유형별)
대한민국 No.1 법률디자인 012

지식재산권 관련 015

디자인용역비 관련 055

계약 관련 065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79

경영·노무 083

기타 099

3

간략한 사례유형(지역별)
대한민국 디자인 법률히로인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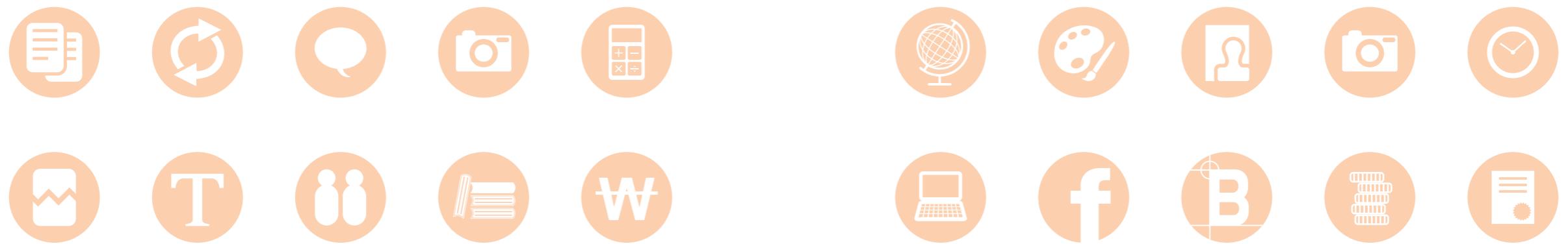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106

광주 및 호남 지역 108

대구 및 경북 지역 110

부산 및 경남 지역 112

부 록
디자인권리보호 안내문 114



대한민국 디자인 법률브레인

디자인 법률,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디자인 법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 -

대한민국 디자인 법률브레인

디자인법률자문단과 함께하면

성공디자인의 길이 보입니다

1

디자인법률자문단 및 수행기관 소개

-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인사말
- 디자인법률자문단 소개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 광주 및 호남 지역 / (재)광주디자인센터
- 대구 및 경북 지역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 부산 및 경남 지역 / (재)부산디자인센터

A BETTER LIFE BY DESIGN

21세기 디자인 시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대한민국 디자인산업의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사회, 환경 각 분야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새로운 디자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은
세계시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 디자인의 시대에 발 맞춰 디자인 관련 분쟁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분쟁 등 디자인 기업 및 디자이너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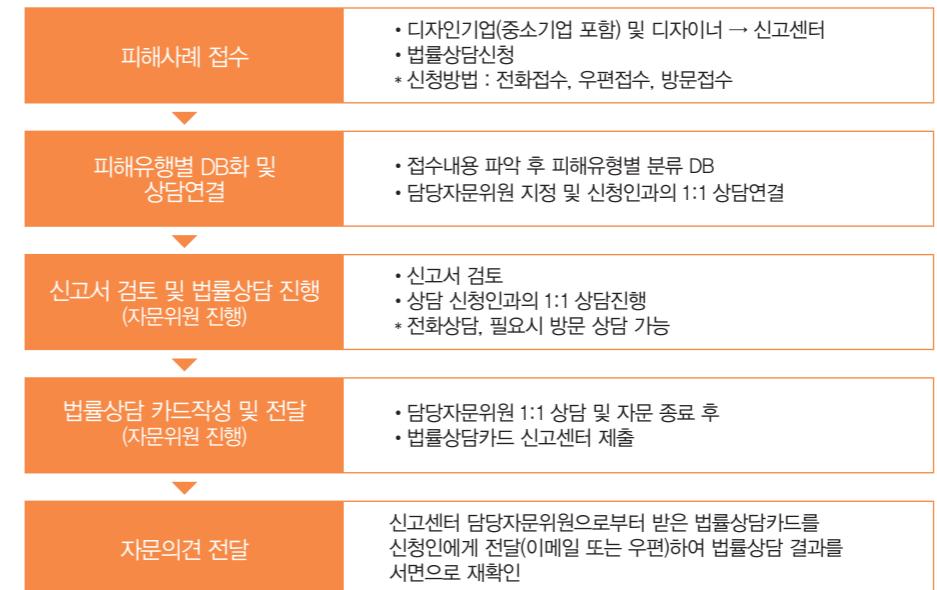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정 용 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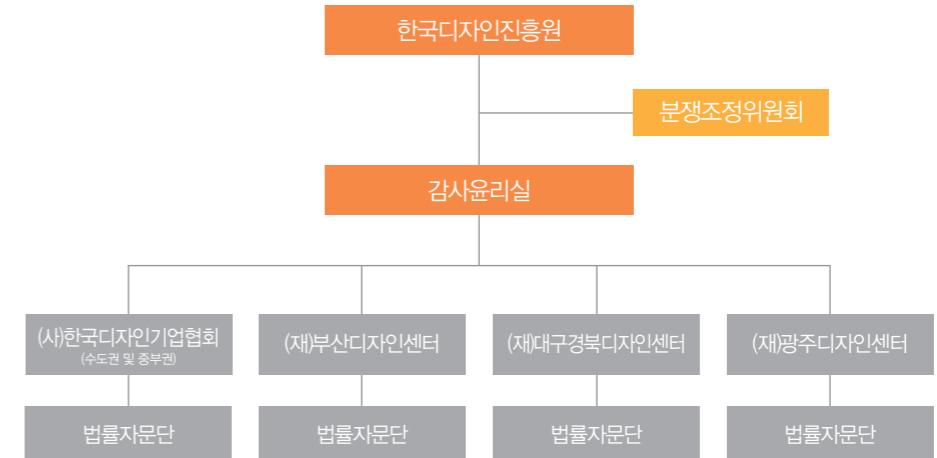
대한민국 디자인 법률브레人們을 소개해 드립니다

디자인 피해사례 접수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유형별 분석, 다양한 해결방법까지 -
디자인법률자문단이 친절하게 자문해 드립니다

〈운영절차〉



〈운영체계〉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디자인법률자문단 상담접수

| 전화 | 1577-4964 | 팩스 | 02-3445-2314 | E-mail | kodfadns@hanmail.net

| 홈페이지 | www.designsos.co.kr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2(삼성동 1) 천마빌딩 601호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역 할
위원장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이수신	협회장	총괄책임
위원	노무법인 원	김우탁	책임노무사	노무상담
	킴리파트너즈	김종대	대표변리사	지재권상담
	법무법인 에이원	이경현	대표변호사	불공정거래상담
	삼정회계법인	이종우	상무이사	회계상담
	대한변리사회 디자인제도위원회	전광출	위원장	유관기관 협조
	(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	최효선	이사	유관기관 협조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2(삼성동 1) 천마빌딩 601호

| 전화 | 02-3445-2313 | 팩스 | 02-3445-2314 | 홈페이지 | www.kodfa.org

광주 및 호남 지역

디자인법률자문단 상담접수

| 전화 | 062-611-5067 | 팩스 | 062-611-5019 | E-mail | holic2431@gdc.or.kr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지길 27(오룡동) (재)광주디자인센터 7층 기업지원팀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 조직도〉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역 할
위원장	(재)광주디자인센터	조장규	팀장	자문단 총괄운영
위원	한국전력	장재원	변호사	불공정거래상담
	신한회계법인	박상우	회계사	회계상담
	문정세무소	류문선	세무사	세무상담
	광주법률원	홍관희	노무사	노무상담
	특허법인 아주양현	이용우	변리사	지재권상담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용득	부센터장	유관단체
	지식재산센터	이화신	센터장	유관단체
	광주테크노파크	김성환	부장	유관단체

(재)광주디자인센터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지길 27(오룡동)

| 전화 | 062-611-5000 | 팩스 | 062-611-5019 | 홈페이지 | www.gdc.or.kr

대구 및 경북 지역

디자인법률자문단 상담접수

| 전화 | 053-740-0034 | 팩스 | 053-740-0000 | E-mail | minapang@dgdc.or.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신천동)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12층



부산 및 경남 지역

디자인법률자문단 상담접수

| 전화 | 051-790-1066 | 팩스 | 051-790-1099 | E-mail | minkc@dcb.or.kr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재)부산디자인센터 3층 307호 전략사업팀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역 할
위원장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현대웅	실 장	자문단 총괄
위원	PMG노무법인	김희억	노무사	노무상담
	법무법인 참길	박준혁	변호사	불공정거래 상담
	이촌회계법인	김봉철	회계사	회계상담
	법무법인 삼일	강나단	美 변호사	국제법률상담
	수성공인 노무사사무소	배준익	노무사	노무상담
	이-버드 특허법률사무소	송정부	변리사	지재권상담
	주대원 변리사사무소	주대원	변리사	디자인분쟁 상담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신천동)

| 전화 | 053-740-0077 | 팩스 | 053-740-0000 | 홈페이지 | www.dgdc.or.kr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역 할
위원장	(재)부산디자인센터	홍군선	원 장	총괄책임
위원	법률사무소 성연	김은지	변호사	불공정거래상담
	김준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준수	변리사	지재권상담
	정병홍 특허사무소	정병홍	변리사	특허, 지재권상담
	회계법인 보명	이창열	회계사	회계상담
	더조은 세무법인	염동배	세무사	세무상담
	아주노무법인	최태열	노무사	노무상담
	법무법인신유	김태우	국제법무실장	영문계약서, 비즈니스자문
	동명대학교	이상영	교 수	지재권상담
	손정우 법률사무소	손정우	변호사	불공정거래상담
	내일회계법인	전운식	회계사	회계상담
	대신특허법률사무소	박지호	변리사	지재권상담

(재)부산디자인센터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 전화 | 051-790-1000 | 팩스 | 051-790-1099 | 홈페이지 | www.dcb.or.kr



대한민국 No.1 법률디자인

디자인 피해사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디자인 피해의 솔루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
대한민국 No.1 법률디자이너,
디자인법률자문단이
성공솔루션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2

법률자문 사례(유형별)

- 지식재산권 관련
- 디자인용역비 관련
- 계약 관련
-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경영·노무
-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저작권에서 특허권, 브랜드까지
지식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똑똑하게 디자인해 드립니다



디자인 권리를 인정받을 좋은 방법 없을까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법적인 보호조치나 서면계약 없이 창작 결과물을 모두 넘겨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진 사례

| 사례경과 |

당사는 디자인기업으로서 최근, 스포츠단체와 구두 계약을 맺고 스포츠단체 관련 홍보물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ai 원본파일을 양도하였고 이는 홍보물 인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스포츠단체가 계약하고 있는 머천다이징 업체에서 상기 ai파일을 스포츠단체로부터 전달받아 당사와 상관없는 타 홍보물품에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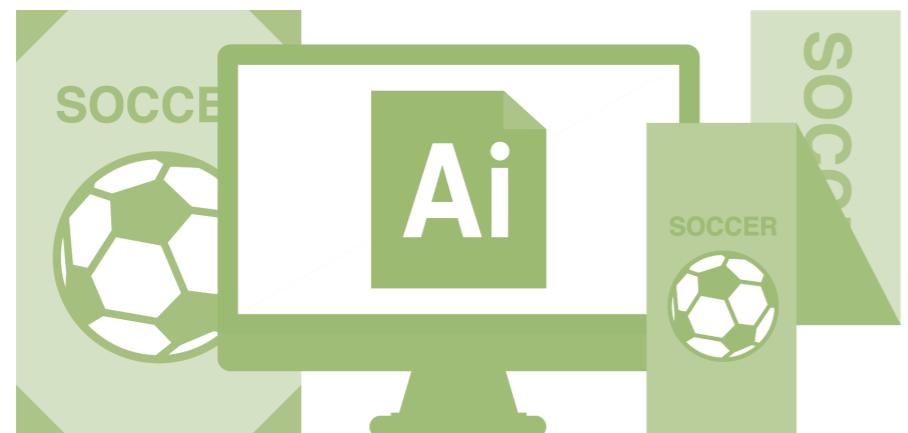
구두계약 외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전에 디자인 기업과의 협업 경험이 없던 스포츠단체 측에

서는 비용을 결제하였으니 당연히 모든 권한을 이양받은 줄 알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자문위원 의견 |

통상 디자인 결과물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권리를 확보한 후 이의 사용을 허락하는 형태로 타인에게 창작결과물을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이 경우 타인이 허락받지 않은 분야에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라도 쌍방간에 서면으로 창작결과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위반했을 때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상청구 소송 등이 가능하며, 이때 서면 계약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구두계약(법적인 증거능력이 없음)에 의하여 결과물의 원본파일을 넘겼고, 대가도 일부 받았으므로 창작결과물의 사용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중국산 가짜 상품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중국산 가짜 상품 판매로 시장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음

| 사례경과 |

당사는 2012년부터 디자인문구를 100% 핸드 메이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수출도 성공적인 반응이 있었고, 각종 어워드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나게 되어 201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해외판매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기를 끌기 시작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국의 인터넷쇼핑몰에 당사 제품을 도용하여 만든 가짜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해 당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가짜상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막막합니다. 현재 중국에 상표출원 신청은 해놓은 상태이며 디자인 출원은 사진촬영이 끝나면 바로 신청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원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 국내 오피라인 매장이나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더 이상 가짜상품이 판매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귀사가 원하는 바는 국내 오피라인 매장이나 중국 온라인 매장에서 귀사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때 적용 가능한 귀사의 권리는 저작권, 디자인권 및상표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에 의한 보호가 있습니다.

국내와 중국에서 위 권리가 각각 인정된다면 귀사는 국내와 중국 양국에서 온라인, 오피라인 가리지 않고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을 제조, 유통, 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과연 귀사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귀사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어야 위와 같은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권리가 인정되었다 하여 무조건 중국에서 그 권리가 인정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디자인 권리침해 논란, 현명한 해결책 없나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디자인전문회사

| 피해내용 | 디자인 권리침해 논란에 대비해
디자인공지증명을 하려고 함

| 사례경과 |

당사는 2015년 A사에서 라우드 소싱을 통한 공모로 1차 디자인 얻은 것을 넘겨받아 디자인을 리뉴얼했습니다. 당사는 향후 라우드 소싱에 공모해서 당선된 업체의 디자인 권리 침해 논란과 A사에서 혹시 제기할 디자인 권리 침해 논란에 대비하고자 디자인공지증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공지증명을 하였을 때, 그들과의 관계에서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디자인공지증명이라도 해놓는 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디자인이 권리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그 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등이 있으나 본건에서는 논외로 함)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해 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신규성이란 등록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거나 세상이 다 알만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위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중에 알려져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디자인공지증명은 위 신규성의 요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공지증명을 등록해 놓으면 차후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자와 공지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한 다툼에서 보다 손쉽게 대응(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공지증명을 등록하였다해서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지증명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있는 당사 디자인 작품을 무단도용하여 제작했는데 어쩌죠?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디자인전문회사

| 피해내용 | 인테리어업체가 당사에서 제작한 디자인가구를 도용해 무단 제작함

| 사례경과 |

당사가 제작한 디자인가구를 타 업체에서 똑같이 카피하여 블로그에 버젓이 자신들의 디자인인 양 홍보하고 있는 것을 얼마 전에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인테리어업체에 전화해 항의를 해도, 디자인가구는 도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거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의 땀과 열정,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당사의 디자인을 타 업체에서 너무도 쉽게 카피해서, 마치 자신들의 제품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정말이지 억울합니다. 당사가 만든 디자인가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해결방법 있을까요?

| 자문위원 의견 |

통상 디자인 결과물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권리를 확보한 후 이의 사용을 허락하는 형태로 타인에게 창작결과물을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타인이 허락받지 않은 분야에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공지디자인은 법적 권리가 부여하지 않지만 본인이 창작한 디자인의 경우 6개월 기간 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권리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개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출원절차를 거쳐 법적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출원 후 1년 정도 소요되지만 디자인 등록이 될 경우 출원일부터 그 권리가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출원일 이후 침해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등록 후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만의 고유한 제품 디자인을 복제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디자인전문회사

| 피해내용 | 당사가 디자인 등록한 제품 디자인을
복제하여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함

| 사례경과 |

당사는 최근 직접 디자인한 제품이 온라인 쇼핑
몰에서 복제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제품디자인은 당사에서 몇 년전 디자인 등
록을 해둔 바 있습니다. 디자인 도용에 대한 대응방
법을 알려주십시오.

| 자문위원 의견 |

특허청 출원 등록된 디자인을 검색한 결과 귀사

의 등록디자인이 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사의
등록디자인과 도용된 디자인을 꼼꼼히 분석해보
니, 도용 제품은 귀사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것으
로 보여지므로, 귀사는 복제제품을 만든 회사를 상
대로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침해주장을 하기 위한 법절차는 먼저 침해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당장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를 할 예정이라는 경고장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귀사 관할 경찰서에 침
해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20
조 침해죄 : 징역 7년 이하 벌금 1억 이하)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나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형사고발을 우선합니
다.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당사자 주장을 듣고도
유사여부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귀사
또는 상대방 업체에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적극, 소극)을 청구하여 심결내용을 수사기관
에 제출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쇄물에 사용한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써도 되나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이미지 사용용도(또는 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 사례경과 |

당사는 최근 E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미
지 사용과 관련해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을 맺었습
니다. 지난 6월 E사의 대리인이라는 법무법인으로
부터 당사의 클라이언트인 'G사'에서 당사가 납품
한 포스터와 리플릿에 사용한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실을 들어 이는 약관상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를 초과하여 임의사용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위 사용권 계약과 관련하여, E사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받은 적이 없었고, 단지 웹사이트상
의 약관만을 참고해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인
쇄물 납품에 따른 인쇄물 사용이미지를 최종 사용
권자인 당사의 클라이언트(G사)가 페이스북에 올
린 것이 과연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
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
용을 허락할 수 있는데, 이 때 허락을 받은 자는 허

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
항, 제2항)

그런데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재산권자가
허락한 이용방법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이용한 경
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용방법이나 조건이 저작
권의 본래적 내용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자가 부가한 채권·채
무관계에 불과한 것인가를 검토하여 전자의 이용방
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
고, 후자의 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
행 책임만이 성립할 뿐 따로 저작권 침해까지 성립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민사 책임을 모두
부담함에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민사책임만을 부
담합니다. 그러나 이는 획일적인 기준은 아니고 구
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건은 귀사가 정식으로 이미지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지를 사용범위 내에서 사용하였으나
귀사로부터 납품받은 고객(G사)이 사용범위를 초
과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귀사가 과연 책임이 있는
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귀사가 직접 페이스
북에 올리지 않은 한 귀사는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없고, 페이스북에 이미지를 사용한 것
에 대해서는 E사와 G사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
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저작권인 일러스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그래픽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사례경과 |

저는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인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작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 인터넷에서 홍보용 광고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땀과 열정,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 언제부터 도용되어 홍보용 광고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즉시 해당 인터넷 페이지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 해당 페이지를 신고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해당 인터넷 페이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페이지 신고를 통해 자신들의 페이지가 폐쇄될 수 있으니 그 피해에 대해 저에게 책임지라는 적반하장식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광고주와 통화하겠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들은 그 마저도 무시하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후 같은 자회사인지는 불확실한 다른 페이지

에서도 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도용한 똑같은 그림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나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 방법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귀하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인 귀하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의 금지(정지), 침해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결과물)의 폐기, 침해의 예방,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 가압류신청, 침해금지, 예방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저작권 침해죄고소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해자에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제작자도 물론 포함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할 경우 귀하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밝히고(그 증명을 위하여 귀하의 창작 그림을 첨부하여야 함), 권리가 광고주 및 광고제작자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는 사실(그 증명을 위해 개작한 그림을 첨부하여야 함)을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침해의 금지(정지), 침해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결과물)의 폐기 및 손해액을 특정하여 배상을 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침해자를 상대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수령인의 회신을 위해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표 출원에서 심사·등록까지 쉽게 알 수 없을까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가 궁금함

| 사례경과 |

상표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스타트업 회사로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작은 회사라 선불리 출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적절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상표권 확보는 상표법에서 정한 출원, 심사,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상표출원은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표장(최종 디자인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브랜드)과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정하여 특허청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이므로 동일한 표장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특허청에 접수된 자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합니다. 출원 접수된 표장은 약 6개월 경과 후 특허청 심사관들에 의하여 구상표법 제6조(성질표시), 제7조(선 출원, 등록표장 유무 등),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확성 등을 심사하여 의견제출통지서 송부, 이에 대한 보정 또는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절차 등을 거쳐 등록결정 또는 등록거절 됩니다. 등록결정된 표장은 정해진 법정기일 내에 소정의 권리설정비용을 특허청에 납입하면 비로소 등록상표가 되며, 10년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나 이에 따른 절차는 문서로 하며,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문서가 송달됩니다. 송달된 문서는 주로 법적인 효력과 관련이 있는 불변기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절되므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1년 정도 동안은 해당 표장이 특허청에서 처리되는 내용을 'KIPRI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이어리를 제작할 때 등록특허를 쓰면 안되나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디자인전문회사

| 피해내용 | 등록특허 및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제품 생산

| 사례경과 |

당사는 최근 클라이언트사의 의뢰로 다이어리 및 제품생산까지 모두 진행한 후,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허법인으로부터 경고문이 클라이언트사로 발송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니 등록특허 및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당사는 단 한 번도 다른 기업의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침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할지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본 경고문의 대처방안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고민하다 주위에 있는 디자인 관련 업체의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조언을 구했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고, 해결 방안도 달라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부득이하게 디자인법률자문단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디자인법률자문단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자문의원님께 최선의 대응책에 대해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니다. 다이어리나 달력 등을 제작할 때 이미 등록된 특허를 사용하면 정말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 자문위원 의견 |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등록특허 또는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경우 이를 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특허, 디자인을 침해한 자는 침해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자로서 각 징역 7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의 등록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등록특허와는 유사한 부분(이하 “유사부분”이라고 함)이 있어, 등록 디자인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문의하신 다이어리 및 달력에 등록특허를 사용하게 되면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제작물을 인쇄하실 때는 이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고장에 대한 처리는 첫째, 유사부분이 이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시중에서 사용되고 유통되었다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권리의 무효를 주장(무효심판 제기)하여 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다이어리가 출원일 이전에 사용, 유통되었다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등록된 디자인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와 당사자께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호합의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자인 등록 상품권한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디자인권 등록 상품에 대한 침해

| 사례경과 |

당사 제품은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을 모두 마치고 2014년 10월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유통 판매중 2016년 3월 11일 처음으로 침해기업에서 국내 유통 시킨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최근 디자인권 침해기업에서 당사에 원만한 합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상품권한을 갖고 있는 제품의 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인지 자문위원님들께 최선의 해결책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해 디자인 피해

를 입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사의 경우에는 법률절차를 통해 침해죄(형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11일 처음으로 침해기업에서 국내에 유통시킨 것을 확인하였지만, 침해죄는 침해자가 타인에게 제공한 침해품 수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정확한 침해품 수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상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통해 침해기업에게 침해품 수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소법상 서류제출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침해품 수 확인이 가능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서면을 발송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귀사의 디자인권 침해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소송은 최후수단으로 본건의 경우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가능한 침해기업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브랜드를 도용해 판매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자체 운영 브랜드 디자인 도용
제작 판매

| 사례경과 |

당사에서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출시일 2015. 06)를 타사가 디자인 도용하여 제작 판매(출시일 2016. 01)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피제품은 전체적인 디자인, 사이즈, 패턴, 원단이 거의 동일하게 당사 제품을 카피했으며, 라벨만 살짝 교체하여 육안으로는 자사제품과 카피제품이 거의 식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유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비록 디자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6개월 이상 먼저 출시하여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도 좋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었으며 당사의 대표상품이자 얼굴인데, 타사는 당사 제품보다 45% 저렴한 가격에 카피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보다 거의 반값에 판매되기 때문에 카피제품의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피제품으로 인하여 당사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무엇보다도 기업이미지 및 신뢰도에서도 카피제품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 브랜드를 도용해 판매한 카피제품으로 인해 피해의 대응방법에 대해 자문받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귀사의 제품과 디자인 침해기업의 제품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귀사의 제품과 디자인 침해기업 제품의 디자인, 사이즈, 패턴, 원단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에서는 디자인 침해기업에게 위 사례가 부정경쟁행위임을 근거로 경고장(내용증명)은 물론, 침해소송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사는 후속 조치로 디자인 침해기업에게 침해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송부하고, 경고장 송달 후에도 디자인 침해기업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같은 제품 디자인, 사이즈, 패턴, 원단 등의 디자인 침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한 제품 중에서 상업적 성공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해서 출시 전에 디자인출원을 통하여 디자인 권리(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침해기업의 카피제품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출한 디자인 시안을 도용하면 어떻게 되죠?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디자인 시안 악의적으로 도용하는 경우

| 사례경과 |

발주업체에서 당사에서 제출한 디자인 시안을 저희 허락없이 무단 도용해 사용하는 횡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 업체에 제출한 디자인 시안들이 최종 선택된 납품 결과물이 아님에도 업체에서 악의적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례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희 회사는 발주업체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위원님께 자문 받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통상의 경우 발주업체의 악의적 시안도용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상 의무이행 청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 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입찰시안 도용 등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 입찰시안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다른 입찰 참가자 등에게 유출될 경우 그 자가 경쟁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상기 대처수단 중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은 “도용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용”이 일정한 대상물을 그 사용권원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선 본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창작물 및 상대방의 사용물을 특정한 후 상대방의 사용물이 본인의 창작물을 이용한 것이라는 사실 및 상대방의 사용물이 본인의 창작물과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디자인 업계에서는 용역수행자와 발주자 사이의 협상력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계약을 통해 사전적으로 문제를 예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 벌어지는 불법행위 예방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후 후속조치를 쉽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와 “디자인 공지증명제도”가 그 방법입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는 일정기간 시안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비밀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이 제도들을 활용하면 디자인 창작의 내용 및 시기를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으므로 상기 입증사항의 입증이 매우 간편해집니다. 만약 상대방 사용 디자인이 제출받은 시안과 동일 또는 누가 보더라도 도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극히 유사한 것이라면 법적 대응 과정에서 상대방보다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산업박람회에서 디자인을 보호받는 방법은?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국제박람회에서 디자인이 카피되었을 때 보호방법

| 사례경과 |

본사는 아직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은 제품으로 중국 한·중·일산업박람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국내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출원은 된 상태지만, 중국 및 일본 특허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디자인이 카피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자문위원 의견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는 “우선권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는 특허 등을 제1국에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 출원에 기재된 발명 등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기간은 파리협약 제4조 C.1에 의하면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하여는 6개월이고, 상기 기간 만료 전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이루어진 후 출원은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진 자기 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는 거절되

지 않고 제3자는 최초출원 기재 발명 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파리협약 제4조 B)

중국 및 일본은 모두 파리협약 동맹국으로 출원된 1건의 특허는 아직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우리나라 출원 이후의 사정인 박람회 출품,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사업화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 및 일본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출원 후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에 출원된 2건의 디자인은 올해 어느 시점에 출원되었는가에 따라 중국 및 일본에 조약 우선권 출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중국 및 일본에 출원을 하고 등록에 성공한다면, 제3자가 우선 기간 중 출원을 통해 동일 권리를 보유할 수 없고 실시를 통해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허락 없는 제3자의 실시는 무단 실시가 되어 해당 국가에서 비교적 쉽게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그 성격이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라 “모방금지권”的 성격을 갖기 때문에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저작권에 의할 경우 권리구제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유명 도자기 업체가 자사상품을 카피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떡하죠?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유명 도자기업체가 도자기 상품을 도용한 경우

| 사례경과 |

본인이 수회에 걸친 시간과 노력,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든 도자기 상품을 모 유명도자기 업체가 직접도 아닌 지인을 통해 다짜고짜 “왜 카피를 하였나”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유명 도자기 업체의 워머를 본인이 카피한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유명하지 않으니 참아야 한다”라며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천년에 걸쳐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 온 도자기 기법이 아무리 다방면으로 분화되어 있다하여도 기본적인 형태나 기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먼저 유명명지지 않았으면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참 억울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근거없는 사실을 근거로 소문을 내거나 영업을 방해할 경우의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명업체라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명업체 여부를 떠나 사실과 다른 소문을 내어 영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강력하게 대응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소문을 들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위 지인을 통해 듣거나, 경고장 형태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받았을 경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제품을 창작했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상대방의 도자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도자기가 상대방 도자기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상대방 도자기가 출시된 지 3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대방 제품이 출시된지 3년 이내에 이를 모방하였을 경우 상기 법률에 의해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을 경우 디자인보호법을 위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선상으로 말씀해주신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 출원 여부를 검색한 결과 관련 디자인이 검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창작한 조형물인 도자기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카피했다는 사실과 도자기가 상대방 도자기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을 근거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이로 인해 입은 영업상의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유무에 따라서 유사품 조치에 차이가 있나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디자인 등록의 유무에 따른
이점과 단점 법률상담

| 사례경과 |

제품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디자인 등록의 유무에 따른 이점과 단점 등 디자인등록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었을 때 제가 만든 디자인과 90% 흡사한 제품이 인터넷 상에 판매가 되고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현재 제작 판매중인 제품과 매우 비슷한 제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디자인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2015년부터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흡사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는 2016년 6월부터입니다. 현재까지 2~3군데 업체를 확인했는데 미등록 상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자문받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디자인이 등록되었을 경우 디자인권이라는 독점 배타권이 생깁니다. 즉, 등록된 디자인권을 토대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권리 행사의 방법으로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만들어 판

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지나 침해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고,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침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소를 하는 등 형사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등록된 디자인을 라이선스 (license)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가 카피하여도 디자인권에 기해서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비용이 발생되며, 등록된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연차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등 디자인권이 소멸될 때까지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합니다. 디자인이 등록되었을 경우 민사상으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손해배상 청구/신용회복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기타 침해자에게 경고(내용증명 등을 통한)나 증거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의 조치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침해죄를 물을 수 있고, 물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록받은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민사상의 조치와 더불어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디자인 보호법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지갑 디자인을 카피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지갑 디자인 카피제품에 대처하는 방법

| 사례경과 |

현재 출원 중인 본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출원상태의 지갑 디자인과 같은 카피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카피제품이 디자인상 극히 일부분의 디자인 수정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서 자사제품과 카피제품의 디자인 침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작업과 더불어 대응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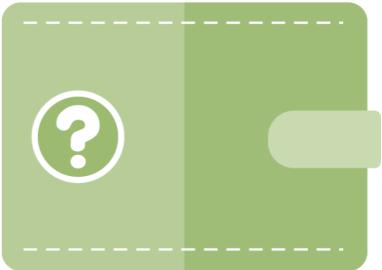
| 자문위원 의견 |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디자인권이 발생되므로 이에 기해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권과 디자인을 도용하고 있는 물품의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먼저, 디자인을 먼저 창작했고 등록을 받았을 경우 디자인권에 기하여 경고장(내용증명),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지방법원에 침해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고장 송달 후에도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물품을 판매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즉,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제품이 시제품 제작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상대방이 제품을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이며, 부정행위를 근거로 경고장(내용증명),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여야 합니다. 경고장 등을 송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침해행위가 반복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잘 활용해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죠?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라이선스를 잘 활용해 판매하기 위한 조언

| 사례경과 |

라이선스를 활용하여(캐릭터 이미지)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하에 라이선스 업체에 계약금을 선 지급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이행하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이선스를 보다 잘 활용해 제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게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일반적으로 계약 및 사업화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계약자유의 원칙 및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이므로, 어떠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권력의 개입이 자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 사건이 전제되지 아니하고는 민간 기업 간의 지식재산 계약 및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하여 특정 법적 보호 수단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라이선스 계약 시의 리스크를 합리적 비용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

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 문제 발생 시 법무부의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자인사업화 지원의 경우에는 지역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서비스를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라이선스 대상이 디자인권이라면, 디자인 실시권을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하고, 디자인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그 실시권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고, 다시 그 담보권을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시권의 가치에 따라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2010년 이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담보대출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만약 라이선스 대상이 저작권이라면, 저작권에 대하여는 저작물의 비배타적 이용권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배타적 이용권에 대한 담보 설정도 공시할 수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이용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품 특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은 어떻게 하죠?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제품 특허출원 관련 조언을 부탁함

| 사례경과 |

첫째, 자사의 차기기획제품을 출시함에 있어 제품생산 후 특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등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제반사항에 관련된 자문을 요청합니다. 둘째,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후 지식재산권 활용방안과 용도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셋째, 제품을 디자인하고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지식재산권 관리 요령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첫째, 신청기업의 기획제품과 관련하여 특허를 진행할 경우 생산후가 아니라 설계변경이 발생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능의 차이가 없다면 아이디어나 컨셉 단계에서 출원하여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기업의 제품은 어느 정도 형상도 갖추어 졌고 시제품도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단계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허출원의 경우 발명제안서를 만들 경우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바로 특허출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디자인 등록의 경우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등을 보호하므로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명이나 물품만 있을 경우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므로 디자인 출원시에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상표는 제품이 출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신청기업에 기획 제품에 사용할 브랜드 이름을 따로 만들었다면 제품출시와 관계없이 상표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또한 변리사와의 상담만으로도 바로 출원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독점 배타권이 발생합니다. 즉, 등록된 권리를 토대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권리 행사의 방법으로는 등록된 권리와 동일한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지나 침해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고,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침해하는 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는 등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등록된 권리에 대해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벤처기업 심사 시에도 활용할 수 있고, 기술담보 대출이나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제품을 디자인하고 발전해 나감에 있어 먼저 우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출시될 경우 경고장이나 침해 소송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방품이 출시되는 것을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제품에 대해 개선할 또는 개선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특허나 디자인 출원 등을 통해 권리 방어를 해야 합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당사의 브랜드를 보호할 순 없나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대기업

| 피해내용 | 상호명 보호 관련 지식재산권 상담

| 사례경과 |

현재 A라는 상호명을 사용 중입니다. 국내 모 대기업에서 A와 비슷한 B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브랜드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자문 받고 싶습니다. (자사의 상호명은 상표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며, 모기업은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 자문위원 의견 |

귀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A는 상품류 구분상 41류에 속하는 상표이며, 모대기업에서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칭호가 유사한 B를 상품류 41류에 출원한 상태입니다. 모대기업에서 출원한 B는 2016년 3월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은 상태이며, 선 등록 서비스표인 타대기업의 상표인 C를 인용표장으로 하여 거절이유가 통지되었고 이에 대해 비유사를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한 상태입니다.

신청기업에서 A를 상표출원할 경우 선 출원된 C 상표나 B상표에 의해 유사함을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등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에서 A를 41

류에 출원할 경우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B가 등록이 될 경우 상표 침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에서는 2013년부터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상표법 제57조의 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 할 권리)에 따른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침해문제가 면책될 수 있는데, 동법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제2호의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B상표의 등록 여부를 지켜본 후 상표의 지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상표가 등록될 경우 침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표 변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는 예전부터 상표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국내 수요자가 알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 개발 텍스타일 디자인의 라이선스 비용은 얼마나 되죠?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기업과 협업시 디자인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자문요청

| 사례경과 |

당사는 제품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당사만의 고유한 디자인 패턴을 개발하여 제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저희 디자이너들의 노하우와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유한 디자인 패턴을 제품에 접목시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기업과 디자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인데, 당사가 타 기업 또는 타 브랜드와 텍스타일 디자인을 협업한다면, 당사가 받게 될 라이선스 비용이 통상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사와 비슷한 경우의 다른 기업들은 라이선스 비용으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디자인 라이선스 비용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브랜드 보유회사(타사)가 귀사로부터 텍스타일 디자인을 라이선스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봅니다. 이때 귀사는 일반적인 디자인 개발용역과 유사하게 개발비용을 받거나, 제품에 관한 매출액 또는 순이익(다만, 순이익의 경우 비용의 범위에 따라 액수가 변동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일정 비율로 배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사가 브랜드 보유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권을 라이선스 받아, 자사의 텍스타일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직접 출시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브랜드 보유회사 측에 브랜드 라이선스 대가를 일시금 또는 월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제품 매출액,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류 등의 경우,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세는 5%~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포털사이트 연재 웹툰의 경우에는 작가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배분율이 최저 7:3에서 최고 9: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사는 위 사례와 다르게 기업 대 기업 간의 수익 배분에 관한 내용이지만, 달리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경우, 귀사가 제품출시를 위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들여야 하는 비용과 노력의 정도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텍스타일 디자인이 제품 및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기여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시어, 브랜드 보유기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라이선스의 가액과 지급 비율, 지급방법 등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타사가 의류 디자인을 도용해 판매하면 어쩌죠?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타사가 자사의 의류 디자인을 도용함

| 사례경과 |

신청업체는 자사가 2013년 가을 겨울부터 꾸준히 판매되던 패딩파카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Y기업의 F라는 브랜드에서 무단으로 실루엣(패턴동일)과 부자재 디테일까지 그대로 카피하여 2016년 신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용업체의 경우 신청업체보다 저렴한 제품으로 대량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어 신청업체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기능성소재 부분이 100% 동일하게 도용된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신청업체가 제공한 패딩파카 사진과 침해업체의 제품사진을 비교하여 볼 때 특징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청업체의 경우 자사의 의류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권 확보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재산권으로서의 보호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창작물 침해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는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형사상 조치 및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의류 디자인의 경우 그 형태를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취급될 수 있으나 양 의류 디자인의 사진만으로 단순 비교시엔 데드카피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꿈’ 브랜드로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피해예상에 대한 문의(상표등록)

| 사례경과 |

현재 디자인지원사업 신청으로 디자인 업체에서 신규 브랜드 상표디자인(BI)을 진행 중입니다. 전직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브랜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브랜드로 상표를 정하였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은 “○○꿈”이고, 혹시 상표등록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정육식당 “○○꿈”으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반응도 좋고 고객들이 기억하기도 쉬울 것 같지만 혹시 이미 등록된 상표는 아닌지, 괜히 협수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지금은 피해사항이 없지만, 만일 디자인이 완성된 후 상표등록 시 혹여 상표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상표등록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특히전문 업체에 문의해도 시원하게 답변해주지 않아서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꿈” 또는 정육식당 “○○꿈”이라는 브랜드로 상표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혹시, 상표등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 자문위원 의견 |

유선상 상담내용 및 이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식당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제43류(특히 유사군코드 S120602)에 대해서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표등록시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상표인지 먼저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피해가 많습니다.

브랜드를 확정하고 BI 등 디자인 작업을 마친 뒤에 상표등록할 경우에 이미 등록된 상표라 상표등록이 안되면 그동안 시간과 비용만 허비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지정상품에 대해서 “○○꿈”的 선등록 상표를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이 표장(명칭)이 동일한 선등록상표가 검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이 출원한 ○○꿈, 꿈꾸는 오병장의 ○○꿈, 생고기 전문점 소야 ○○꿈 꿀, ○○꿈 꿀는집, ○○꿈 낙지꿈 등 다수의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상기업이 질의하신 “○○꿈” 관련 상표등록출원의 등록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는, “○○꿈”에 다른 식별력 있는 단어를 추가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꿈”과 유사하지 않은 대체상표를 개발하셔서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T 기존 서체를 변형한 로고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기타(법무법인 등)

| 피해내용 | 서체 저작권관련 분쟁

| 사례경과 |

저희는 CI/BI 등 브랜드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회사입니다. 대부분은 디자인개발 소프트웨어로 심볼이나 로고 등을 직접 디자인합니다. 간혹 로고타입 개발 시 상용서체를 기반으로 획 굵기/길이/형태 등을 변형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이나 기업에서 서체와 관련해 문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전에 개발 완료한 디자인 제작물의 서체저작권문제로 연락이 종종 오는데 보통은 라이선스를 구매한 서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계속 서체와 관련된 문의 전화를 반복보니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중인 서체의 사용범위와 어느 정도까지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체의 형태를 변형해서 로고를 개발할 경우 서체 개발회사의 저작권에 침해가 될까요?

만일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다름'을 인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장 전면이나 라벨 전면에 사용되는 명칭(예를 들어 과자포장의 새우깡 같은 명칭)은 라이선스 서체 그대로 사용

해도 저작권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포장에 표시되는 요소(브랜드, 제품명, 표기사항) 이 세 가지의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법에서 폰트(서체) 도안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 벌로 이루어진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의 저작물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 특정 폰트 도안을 인쇄물 등에 사용했을 경우, “우리 폰트와 동일한 모양의 서체가 사용된 인쇄물이니, 당연히 우리 폰트 파일을 사용했겠지”라는 논리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기업에서 라이선스료를 정당하게 지불한 폰트를 이용하여 변형서체를 개발하시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우려는 없습니다. 대상기업은 변형서체 도안을 개발한 것이지, 변형서체 폰트파일을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체 개발사에서 해당 폰트에 대한 디자인권을 보유한 경우는 별론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폰트 라이선스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즉, 거래처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거래처는 그 제품에 폰트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폰트파일이 이용된 결과물인 제품 패키지에는 폰트의 이미지만이 이용되므로,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우려는 없습니다.

디자인저작권 등을 법인에 양도할 수 있나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사진저작권 및 의장권(디자인권)에 대한 개인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양도 가능성 문의

| 사례경과 |

신청업체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며, 대표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저작권 및 디자인권을 신설 법인으로 양도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가능성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함께 법인에 참여하는 스튜디오 실장님 개인이 가진 사진저작권

을 법인으로 역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디자인저작권, 사진저작권은 물론 디자인권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자인저작권, 사진저작권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표자 개인과 법인, 스튜디오 실장님과 법인 사이에 저작물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저작권 이전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음을 알려 드립니다.

디자인권의 경우 당연히 지식재산권으로서 개인으로부터 법인에 대해 양도(이전)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디자인권의 이전의 경우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특허원부에 이전등록 절차를 밟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안작업 결과물의 법적인 보호방안은 없나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시안물 무단사용 등에 관한 문의

| 사례경과 |

당사는 제품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등의 시안작업을 하여, 작업결과물을 고객사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패키지 등의 디자인을 하게 될 경우 시안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광고주에게 시안으로 보여드린 제품을 타 업체에 넘겨주어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작업결과물에 포함된 내용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을 한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당사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시안작업 결과물의 법적인 보호방안 및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가 광고주에게 시안으로 제시한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의 작업물들이 사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사의 제작물을 보호하거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사의 제작물들을 광고주나 타 기업들부터 처음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업체의 경우 거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씨하나 변함없이 똑같은 작업물을 시안으로 넘겼던 내용 그대로 출시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요즘,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시안을 무단도용해 불법적으로 제작해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과거의 업계 관행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네요. 제품 및 패키지에 관한 디자인 시안작업의 결과물은 저작권법의 특성상 창작과 동시에 자문신청기업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자문신청기업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디자인 시안작업의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예컨대 고객사가 자문신청기업의 시안작업 결과물로 판매행위 등을 하게 되면 고객사를 상대로 판매정지, 관련제품 폐기 등의 법적인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문신청기업이 입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등의 성립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대응과 별도로, 작업결과물을 바탕으로 특허출원을 하였다면 이는 발명자가 아닌자에 의하여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로서 스스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서 시안에 대한 대가 지급 규정이나 무단사용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고, 고객사에 대한 업무가 진행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디자인 지원사업 결과물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상표등록 가능여부 문의 및 신청절차

| 사례경과 |

당사는 디자인지원사업 해당업체로 선정되어 간장 제품 라벨지 디자인을 제작하였으며, PDF파일로 그 결과물을 전달하였습니다. 당사처럼 디자인 지원사업 해당업체로 선정될 경우에 본 사업을 통해 완성한 BI, CI, 로고, 패키지, 라벨 등 그 결과물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디자인 지원사업 결과물에 대한 상표등록 여부 및 신청절차와 관련해 자문위원님께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신청업체는 디자인지원사업에 선정된 후에 간장 라벨지를 디자인해서 최종 결과물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업체가 전달한 결과물인 라벨지 디자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신청업체의 디자인은 자타상품식별을 위한 브랜드 개발이라기보다는 식품 포장용기에 부착되는 라벨지 디자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문위원단의 신청업체 디자인 결과물 분석에 의하면 신청업체에 대해 제조자 표시인 제조사명 이외에는 별다른 상품식별표지 기능을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문위원단은 신청업체의 디자인 결과물이 상표등록보다는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신청업체에 설명드렸습니다. 신청업체의 경우처럼 디자인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상표등록을 고민하는 업체는 상표등록을 하기에 앞서서 결과물이 상표등록에 해당하는지, 디자인등록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 등록출원 방안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에게 문의해 충분한 조언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W 계약 외의 디자인 제작물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기타

| 피해내용 | 계약 외 디자인 제작물의

디자인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사례경과 |

첫째, 홍보물 포스터 의뢰가 들어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소액의 프로젝트라 따로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저희가 한 포스터를 이용한 프로그램북, 티켓, 현수막 등 모든 홍보물에 적용하여 행사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스터 디자인에 대한 견적을 청구하였을 뿐 저작물의 이용권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작물에 대한 디자인 비용을 따로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클라이언트의 도서출판에 대한 의뢰가 와서 어린이용 도서들의 디자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서에 쓰이는 폰트를 저희는 구매를 해 쓰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서체를 갖고 있지 않은데, 책이 클라이언트의 이름으로 출판이 될 때 클라이언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2가지 사례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자문위원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별도 계약 없이 포스터 제작 납품한 이후 포스터 이외 물품에 대해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타 제작

물에 대한 디자인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프로그램 저작물인 폰트를 사용하여 도서 제작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출판해 줄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여부와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대한 범위와 폰트의 정당 사용범위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신청업체의 경우 명확하게 저작물에 대한 사용범위를 지정하지 않은 채 저작물인 디자인을 창작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의뢰를 한 업체 측에 이전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나, 본 사안의 경우처럼 아무런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남아 있고 저작재산권 중 포스터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락 또는 이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포스터 제작에만 국한되어 이용할 것을 구두 합의하였고 보상금액도 그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기타 물품에 대해 사용허락은 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프로그램 저작물로서의 폰트는 프로그램 자체의 복제 배포 등에 한정하여 미치며 출판물 등에 인쇄된 상태에서의 글자체의 형태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신청업체가 정당하게 폰트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폰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도서에 대해서까지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대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해도 되나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기타

| 피해내용 | 매대 디자인 도용됨

| 사례경과 |

시장에서 제작된 매대 디자인이 그대로 도용되어 다른 지역에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매대 제작 업체는 S사이며, 해당 업체는 이미 특허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용한 업체는 발주업체인 경북 도내 H사 및 제작업체인 W사로 확인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신청인이 보내준 매대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양 디자인 또는 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만으로도 침해금지청구 또는 사용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현행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 계속 중인 발명 또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출원공개 및 서면 통보를 전제조건으로 통상 실시료 상당액에 해당되는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청구권은 특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되어야만 행사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최초 문의 당시(11월 1일 기준)에는 상기 특허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 모두 공개도 되지 않았으며 등록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상기 침해금지청구나 사용금지청구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설명하였으며, 등록 결정이 나올 시기 등에 대해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11월 28일을 기준으로 디자인 등록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하였으며, 조속히 설정등록을 하여 디자인권을 발생시킨 후 바로 디자인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또는 사용중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작가작품을 패러디할 경우 저작권료가 발생하나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기타(개인작가)

| 피해내용 | 피해사례는 아니나 향후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컨설팅 요청

| 사례경과 |

작가작품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재개발할 경우 원작의 몇 % 이상 다르게 하여야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작가 작품을 적용하여 디자인에 활용 후 상품을 만들게 되면 작가와 디자인 기업과의 수익 분배 등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대상기업의 첫 번째 질의는 패러디 내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됩니다. 패러디는 저작권이 있는 사진, 그림, 포스터, 글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패러디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러디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패러디의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예외적인 경우에 면책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패러디가 아닌 단순한 2차적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이

상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됩니다.

대상기업의 재개발 결과물이 패러디인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①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 및 풍자 여부
- ②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 ③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 ④ 이용된 방법과 형태
- ⑤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 ⑥ 원저작물의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편, 대상기업의 재개발 결과물이 패러디가 아닌 단순한 2차적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이상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작가와 기업간 수익분배 사례를 보면 도서류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세는 5%~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현재 웹툰의 경우, 작가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배분율은 최저 7:3에서 최고 9: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기업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타업계에서의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제품출시를 위해 대상기업이 추가로 들여야 하는 비용과 노력의 정도를 감안해서 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B 등록상표권자로서 유사상표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유사상표로 인한 독점권 침해

| 사례경과 |

상당 신청기업의 대표자 김○○님은 “○○꾼”을 표장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며, 동 등록 상표는 제43류를 지정서비스업류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신청서의 내용 및 유선상으로 파악한 사실 관계에 따르면, 문의사항의 요지는 “최○○”를 표장으로 하여 동일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편, 2건의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한 바 있는 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자로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두 가지의 대응을 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김○○ 대표님께서는 “출원인 최○○의 2건의 서비스표등록출원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하므로 거절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특허청에 대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대한 정보제공은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로써 타인과의 상표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를 통하여 출원인 최○○의 위 출원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님께서는 최○○씨측에게 기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동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최○○씨측의 태도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금지를 할 것인지 여부 등의 대응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B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를 하면 상표권과 사용권은 어떻게 되죠?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기타(개인)

| 피해내용 |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에

대응하는 방안

| 사례경과 |

본사는 T브랜드의 상표권자인 조○○와 상표 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3자가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 조○○를 대상으로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해당 상표인 T브랜드가 최근 3년간 사용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T브랜드는 최근 3년간 학원 및 학교 방과 후 교실에 교재를 공급하는 등 꾸준히 상표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상표 권리인 조○○와 본 회사 모두 법률적 지식이 적어 많은 자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청업체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T브랜드 등록 상표에 대해 불사용을 이유로 심판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만일 상표등록이 취소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자문위원 의견 |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청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록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의 경우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음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신청업체와 상표권자와의 사용권 계약서 및 실제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례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심판청구인의 불사용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용권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와의 계약만으로도 사용권 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하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용권도 등록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상태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한 사진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임을 우선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한 후 불사용 취소의 원인이 된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디자인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기타

| 피해내용 | 해외 디자인 등록 관련 문의

| 사례경과 |

신청업체는 해외 디자인 등록 방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디자인 카피를 당했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해외에서의 디자인 등록의 경우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도 별도로 디자인 등록출원

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선출원한 디자인이 있다면 국내의 선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해외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 소급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기 우선권 주장기간을 도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선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이라면 해외에서 신규성 상실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디자인 카피를 당했을 경우 해외에서 독점배타권을 주장할 권원이 없다면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경우 베른 협약에 의해 해외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 해외의 현지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별도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T PDF 파일의 폰트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폰트 저작권 관련 문의

| 사례경과 |

당사가 B사와 계약한 건은 소식지 작업, 인쇄, e-book 제작입니다. 인쇄용 서체는 저희 회사가 라이선스를 구비하고 있고, e-book도 법률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잘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PDF파일이었는데, 인쇄용으로 제작된 작업물의 PDF파일을 B사에서 그냥 올리는 바람에 폰트저작권을 갖고 있는 C사에서 서체저작권을 문제 삼아 당사로 연락이 왔습니다.

PDF는 계약에 없는 내용이라 저희와 아무 관련이 없어서 저희가 책임을 안져도 괜찮지만, B사와 계속 거래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 쪽에서 책임을 안질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큰 고민입니다. 폰트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만원 이상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사이트들을 보면 소식지나, 브로슈어 등을 PDF 파일로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해놓은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광고주인 B사에서 별다른 통지 없이 귀사가 제작한 소식지를 인터넷에 E-book 등 전자파일의 형태로 게재하였고, 귀사는 현재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B사는 저작권 없는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되며,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사가 책임을 지려한다면 C사와 손해배상에 관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계약서에 인쇄에 관하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약 상대방에게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사는 인쇄용 소식지를 제작·복제할 수 있는 저작권만 보유하고 있는바, 귀사가 E-book 또는 PDF형태로 위 소식지를 인터넷 등에 게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경우 귀사는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타기업의 자사 디자인 침해시 대응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지식재산권 침해 및 관리

| 사례경과 |

당사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타 기업이 저희 회사의 제품 디자인을 침해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디자인 침해 범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당사의 디자인과 유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존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출원 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자체적으로 디자인권을 출원했는데 수차례 출원 보정 후 출원 각하 상황이 나왔을 경우의 출

원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먼저 귀사의 디자인이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심판원에 디자인 관련해서 권리범위 확인 신청을 해서 유사성을 통한 침해 여부를 판단받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해서 특허정보원 사이트의 KIPRIS를 통한 검색 및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맵을 통해 검색을 보강할 수 있으며, 특허청 출원 및 등록 이후 권리유지를 위한 등록료 납부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변리사 사무실 이용 가능) 출원방식 심사나 기초요건 심사에 출원 무효각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를 출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상표출원 및 도용문제 대처방안

| 사례경과 |

급하게 브랜드 네임의 상표출원 등록이 필요한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를 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면 등록을 하지 못하나요? 다른 사람이 제 디자인이나 로고 등을 카피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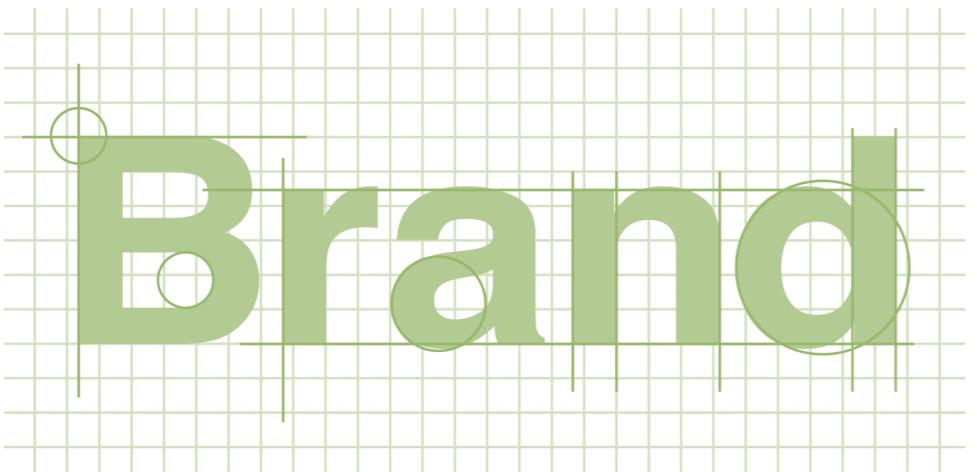
상표의 사용범위가 제품과 회사명으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기술을 디자인하고, 특허를 내고, 실용실안을 내고, 로고, 패턴 등 특징적

인 것을 찾아내어 상표나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로고의 위치가 특별하면 본인만의 라벨로도 사용가능하며, 본인과 같은 기술을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 및 등록을 받았다면 기술이 있기에 신규성이 없어 등록받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하여야 하며(선 출원),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됩니다. 도용발견 시에는 박스 로고 제품, 간판 등 상호 같이 사진을 찍어놓는 등의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확인해 사용 시기, 사용이유 등을 물어봐야하며, 이런 경우 납품한 사람과 만든 사람, 판매한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은 날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컨소시엄 파트너가 다른 사업에 동일주제로 단독 참여하면 어쩌죠?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특허출원 방법 문의

| 사례경과 |

국가 R&D사업을 따내기 위해 다른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진행과정 중 아이템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했고,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출원은 마침상태이구요. 최선을 다했지만 R&D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고, 컨소시엄도 자연스럽게 해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함께 참여했던 파트너가 다른 지원 사업에 동일한 주제로 단독으로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살짝 바꿔 제출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동일 아이템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허출원을 해놨지만, 출원결과에 대해서 승인이나 거절, 보류의 판단이 나오기에는 아직도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선출원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당사에 있으나, 이것을 증빙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 대해 해당 기업은 특허등록기간 안에는 어떤 판정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정되지 않은 R&D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비밀유지계약서를 상호 작성했습니다만,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파기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때 작성한 비밀유지계약서가 반드시 해당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단순히 서로간의 신뢰나 정보보호차원뿐만 아니라,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도 심사기간 중에라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원한 특허기술이 나중에 보류나 거절 등의 판정이 난다면, 공유했던 아이템을 고스란히 타 기업에 내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요즘 잠이 오질 않습니다. 특허출원 기간 중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 장치나,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자문위원 의견 |

특허출원이 등록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특허출원을 공개하고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고지하면 특허등록 후에 이에 따른 통상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허등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이 계류 중인 경우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3개월 내에 특허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해당 당사자에 한정된 범위이지만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제 3자의 신규아이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 디자인 도용제품을 수입 판매하는데 어떡하죠?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디자인 도용에 관한 문의

| 사례경과 |

당사는 디자인회사로 현재 전화번호 알림판을 디자인하여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해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화번호 알림판은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국내 유통업체중 한곳에서 도용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입 도용제품에 대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귀사는 전화번호 알림판을 실용신안 등록을 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실용신안 설정 등록 및 등록 공고가 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실용신안권의 권리가 독점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용신안등록 원부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 범위 내에서 다른 회사가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용신안법 제45조),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29조, 30조).

귀사는 해당기업에 경고장(내용증명)을 보내어 당장 도용제품의 수입 중지를 요청하고, 계속해서 수입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용신안법 제29조〉

등록신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동의없이 이미지 불법사용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이미지 저작권에 관한 문의

| 사례경과 |

당사와 브랜드 개발 계약을 체결한 B사가 브랜드 개발시 이해를 돋기 위해 당사가 사용한 이미지를 당사와 사전 문의도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확인한 저작권자가 B사에게 이미지 불법사용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B사는 저작권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레퍼런스 이미지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CI, BI 개발 함께 있어 제공한 매뉴얼 북의 이미지 저작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자문요청 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귀사와 B사 사이 위탁업체 확인서의 계약서를 확인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동 사업에서 습득한 지식 및 아이디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유출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은 A사에 있음에 동의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 사안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귀사는 먼저 번거롭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북의 이미지 불법사용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위 이미지를 귀사가 구입한 이미지라면 귀사가 저작권자에게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B사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임)

그러나 만약 구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B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금청구를 소송상으로 청구받지 않는다면 위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이해를 돋기 위한' 이미지라는 부분을 설명하신 바 있으므로, 당연히 구상채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상 청구가 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허락없이 메인카피를 도용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카피 도용시 대처 방안

| 사례경과 |

당사는 A대학 201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제안 입찰에 참가했지만 아쉽게도 탈락하였습니다. 몇 달 뒤 1순위 업체에서 납품한 수시모집요강 최종 결과물이 궁금해 홈페이지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사가 제출한 전년도 수시모집 전체 메인카피뿐 아니라 올해 제안한 메인카피까지 A대학이 당사 허락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A대학에게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자 자문을 구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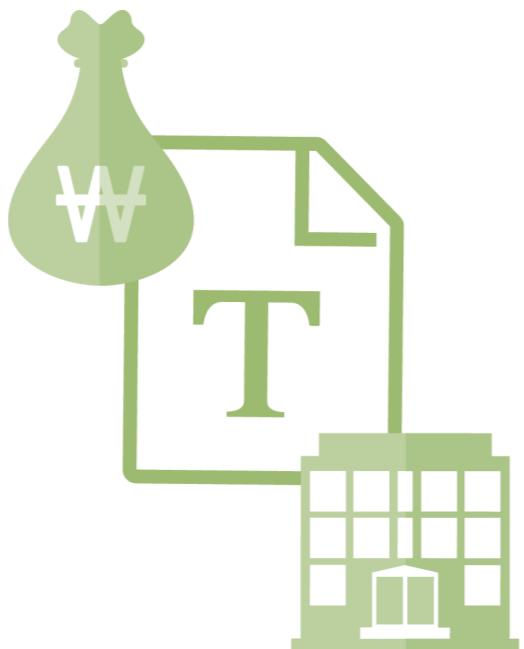
전년도 요강은 저희업체에서 기획, 디자인, 촬영 까지 해서 납품 완료했습니다만 납품 완료와 동시에 최종 결과물의 저작권이 A대학에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제안서에 다른 메인 카피까지 도용 한 것에 대해서는 A학교 및 B인쇄업체에게 책임을 묻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A대학 측에서 저작권자인 귀사의 동의 없이 카

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위 디자인의 사용료를 청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대학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상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저작물의 사용료를 제 3자에게 청구한 적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또는 통상적인 위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용료가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조정이 된다면 6개월 이내, 판결까지 받는다면 약 1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상 고소를 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이는 사용료와 별개의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용역비 관련

디자인 작업비에서 추가 제작비까지 디자인용역과 관련된 미지급 비용을 시원하게 디자인해 드립니다



디자인 용역비를 최대한 빨리 받는 방법 없나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디자인용역비의 70% 미지급

| 사례경과 |

2015년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용역을 착수하여 결과물을 모두 납품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중 선금 30%는 지급 받았으나, 잔금 70%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발주처에서는 A업체에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하는데, A업체에서는 본인에게 용역비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귀하는 A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서도 1년이 지나도록 총 용역대금의 70%에 이르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A사의 태도로 볼 때 임의지급(합의)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에 앞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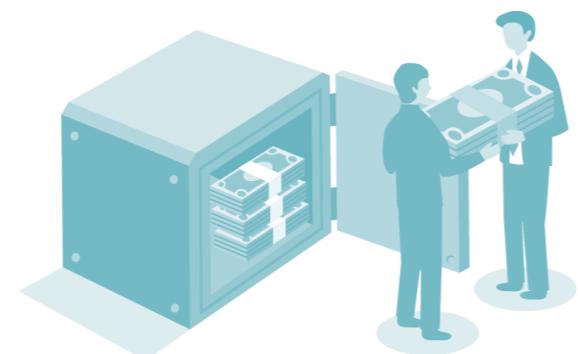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붙인 스티커에 기재된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만(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져

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해야 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나, 그러한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A사가 내용증명의 의미를 위와 같이 오해하거나 소송으로까지 가는 것을 싫어해서 임의지급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사가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결국 귀하는 A사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판결에 기초하여 A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의 제기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과 A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굳이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역대금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이행완료일 또는 사실상 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권리가 잃지 않습니다.



소액 디자인 작업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고객의 부당한 작업비 청구 거절

| 사례경과 |

저는 최근 D라는 중소기업(이하 “고객사”)에서 브로슈어 형식의 파일을 작업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지인을 통하여 받게 된 의뢰이기도 하였고, 지급금액이 소액이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고객사의 담당 직원을 통하여 원하는 디자인 방향과 작업 내용의 일부 텍스트가 포함된 작업설명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수차례에 걸쳐 디자인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고객사의 추가 시안을 달라는 요청에 계속하여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일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무차별적인 시안 요구에 지쳐 결국 저는 더 이상의 작업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디자인 건의 취소와 함께 최소한의 진행비만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고객사의 담당직원은 제가 요구한 최소한의 진행비를 다 줄 수는 없다며, 금액을 깎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부탁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카톡이나 이메일 주고받은 것을 종합하면 고객사

와 귀하 사이의 디자인용역계약 체결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고객사 직원의 시안 선택 후 충실히 디자인개발을 하였음에도 고객사의 상사가 이를 무시하고 시안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른 시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을 벗어난 고객사의 과도한 요구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불응하였다 하여 귀하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종시안이 선택되지 않은 만큼 계약이 완성된 것이라 할 수는 없어 용역대금 전부를 요구할 수는 없는바, 귀하가 그 절반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객사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귀하로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디자인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CI 작업비와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CI개발 작업비와 추가비용 미지급 건

| 사례경과 |

최근 S사의 의뢰를 받아, CI개발 진행 중인데 S사에서 응답을 늦게 하는 등의 문제로 작업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최초 견적서에 디자인 수량이 추가되면 추가비용을 청구한다고 했지만 S사는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지불할 수 없고, 타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여주며 타 업체와 저의 견적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해 증빙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로 신뢰가 깨진 것이라 간주하고 계약파기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견적차이에 대한 가격의 타당성을 증빙하는 것은 제 의무가 아니고, 작업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무례한 요청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S사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추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폐기하며 청구도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된 2차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S사는 최초 견적서 상의 항목 중 아직 제작하지 않은 일부 항목까지 취소하겠다면서 그 부분 대금마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디자인 비용을 청구하였다

가 추가 디자인도 폐기하고 추가 디자인비용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차 견적서를 보낸 상태에서 추가 디자인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자문위원 의견 |

구두상의 합의도 합의입니다. 합의는 법률이 정하는 무효 사유(반사회질서행위, 폭리행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등) 또는 취소 사유(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행위 등)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S사는 추가 디자인을 폐기하고 추가 디자인비용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보낸 2차 견적서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재하였으며, 위와 같은 합의에 특별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추가 디자인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와 S사는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S사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업무지시를 하고 귀하는 이에 응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양자 사이에 견적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체결한 계약은 합의해제(해지)하거나, 그 외에 해제사유(대부분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해제사유입니다.)가 존재하여 해제를 통보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본건의 경우 최초 계약 중 일부(아직 제작하지 않은 부분)의 해제를 합의한 바 없고, 귀하가 본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없으며, 그 외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T 공공사업 디자인개발 용역비를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공공사업 용역업체가 디자인 개발비를 미지급한 경우

| 사례경과 |

2012년 공공사업 용역업체에게 디자인개발 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개발 비용 및 대금지급을 2016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업체의 거래지자체에 거래 제제를 요구하고, 정부기관의 절차를 통한 대금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나 법률적 유효기간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 당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용역을 수행한 결과물과 그 결과물에 대한 증빙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 자문위원 의견 |

디자인용역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이와 관련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민법 제 163조 및 164조가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금액도 소액이며, 대개 그에 대한 영수증이 교부되지

않거나 교부되더라도 이를 오래 보존하지 않으며, 이러한 채권은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거래관행인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디자인용역 대금지급청구권의 경우에도 “도급받은 저의 공사에 관한 채권” 또는 “생산물의 대가”에 관한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유추하여 그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법률가들 사이에서의 다수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 168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2012년에 수행된 디자인용역의 대금지급청구권은 2016년 현재 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재판상 청구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 판결을 합니다. 즉, 상대방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4조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의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는 하도급법에 의한 대금직접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채무승인이나 임의 변제가 없는 한 공식 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비 지급을 계속 미루는데 어떡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구두계약 후 작업한

디자인 용역비 미지급

| 사례경과 |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에서 기업내부 일정상의 이유로 선 디자인개발 진행 후 용역비 지급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용역비는 약속한 기한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구두계약 하에 디자인을 진행하였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난 후, 지급기한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총 3건)

| 자문위원 의견 |

귀사는 용역대금의 완납 이전에 용역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였고, 달리 그 결과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귀사의 용역 결과물에 대한 권리是最소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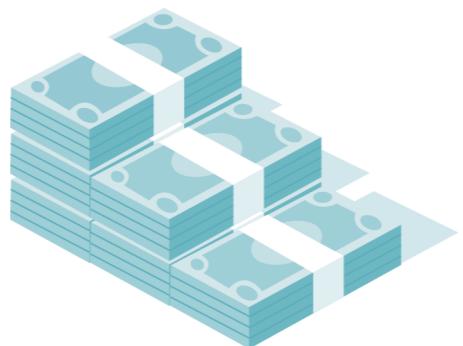
한편 상대방은 귀사의 용역 결과물 중 최소 1건의 내용 중 일부를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 하에 서 가장 효과적은 대금회수 방법은 상대방의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디자인개발 용역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하고, 계약상의 용역비 지급 청구

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꾸어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되었던 권리는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해제에 의하여 상대방은 귀사의 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귀사는 계약 해제 이후에도 상대방이 귀사의 용역 결과물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추가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법 위반죄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대방에게 용역대금 및 그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신속히 자발적으로 배상하도록하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비 미지급 액수가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기 힘들고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어 계약 내용 및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자발적 대금 지급을 유도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이너와 공동작업 했는데 재시안 만들면 비용이 더 드나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외부 디자이너 디자인 용역비 미지급

| 사례경과 |

당사는 디자인 회사로, 최근 제조업체로부터 디자인 의뢰를 받았으나 해당 제품 디자인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아 제조업체의 양해를 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디자인 경험이 풍부한 외부디자이너와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디자이너에게 전달하였고, 일정기간이 지나 당사와 외부 디자이너는 공동 작업으로 완성한 디자인을 제조업체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디자인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조업체는 다시 디자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는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며 약속한 돈을 지급하거나 추가 작업을 원한다면 추가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작업하려면 디자이너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 자문위원 의견 |

요즘엔 외부디자이너와 공동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처음에 용역기간과 용역비용, 용역범

위 등을 명확히 합의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귀사처럼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귀사는 외부 디자이너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로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추가 작업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귀사와 외부 디자이너 사이의 약정은 제조업체가 의뢰한 디자인을 아무런 문제없이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재 귀사와 외부 디자이너의 공동작업에 따른 결과물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귀사와 디자이너 간의 최초 약정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협의하여 업무를 원활히 완료할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디자이너의 협조를 구할 수 없게 되어 업무를 제때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디자이너의 비협조로 인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귀사의 손해 전부를 보전하는 방법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손해 전부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외부디자이너와 공동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약단계에서부터 법률자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뢰자가 안이 마음에 안든다고 계속 클레임을 거는데 어떡하죠?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납품된 디자인 건에 대한
지속적인 클레임

| 사례경과 |

당사는 의뢰자로부터 디자인 개발을 요청받아 주어진 시간내에 최선을 다해 디자인을 개발했고, 그 결과물을 의뢰자에게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면, 재작업을 요청하고 잔금을 처리해 주지 않는 등 의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 당사는 의뢰자의 기준에 맞춰 아직도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지, 혹시 해결된 선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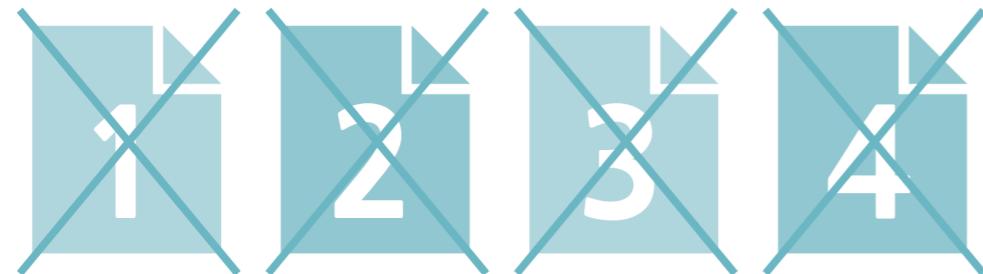
| 자문위원 의견 |

귀사의 경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타 회사에 납품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클라이언트회사(도급인)의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하자인지 단순하게 주관적인 하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자라면 그에 합당한 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자라고 볼 여지가 없고,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면 귀사는 잔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객관적 여부 및 하자의 중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민법 제 667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 대금지불을 계속 미루는데 어떡하면 제대로 받을까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계약금액 지불 요청방법

| 사례경과 |

당사는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제작업체인 B사로부터 신제품 디자인에 대한 의뢰를 받고 신제품 디자인을 완성한 후에 B사에 인도하였습니다. 당사의 디자인을 받은 B사는 디자인에 대해 흡족해 하며 계약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제품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자 약속하였던 대금지급을 미루면서 대금지급기한을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B사의 사정을 감안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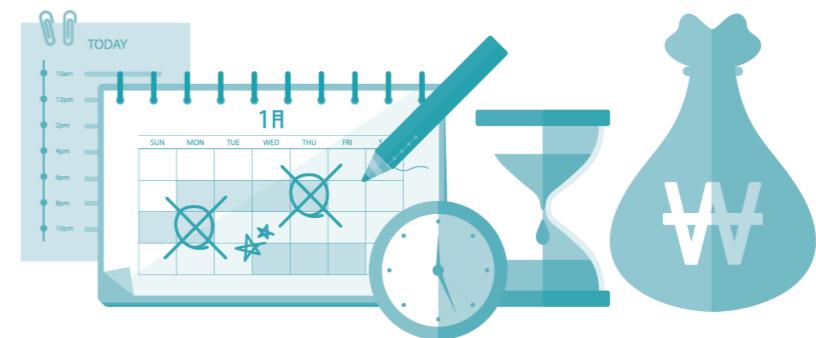
그런데 B사는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약속받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귀사는 B사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용역 제공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킨 바가 없으므로 대금을 제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및 지연이자(계약서 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상사채권 6%)에 대한 지급요청을 다시 해보시고 이에 대한 B사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수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B사가 신제품의 출시 지연만으로 대금지급을 미루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바, B사가 대금지급 기한을 다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든지 할 경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으셔서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사의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부득이 법적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경우라면 B사 명의의 재산 및 거래처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적으로 하셔서 향후 재판 승소 이후 집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련

디자인 계약에서 계약 해지까지
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서류를
꼼꼼하게 디자인해 드립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죠?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비용 손실 발생

| 사례경과 |

본인은 최근 A사로부터 교재개발 디자인을 의뢰 받아 해당업체 대표이사와 구두로 디자인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인은 협의한 내용대로, 팀을 구성하여 사무실을 얻고 인테리어와 집기, 장비 등을 마련하여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투자회사인 A사에서 투자하는 B사의 산학교육연구소에서 디자인 개발비에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투자회사인 A사는 조속한 협의를 위해 모든 권한을 B사에 위임하였고, 저는 A사와 당초 협의한 계약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B사와 재협의하여 해당 의뢰내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그 이후, 본인이 제시하는 디자인 시안이 마음에 안든다며 수차례 거절을 하였고, 결국 계약을 해지하자는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본인은 계약을 지속시키기 위한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소장은 착수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것인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최근엔 계약 당사자 간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바, 책임의 주된 내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 성립 후 이행 중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동안 발생한 비용 및 이행이익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행이익은 계약이 무사히 완료되었다면 상대방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합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B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비용 손실이 발생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귀사가 계약에 따라 시안을 몇 개 제시하였는데, 고객사에서 그러한 의견교환 없이 막무가내로 지극히 초기 단계의 시안 일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의 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고객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귀하에게 그 동안 발생한 비용 및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이행이익은 개입사업체인 귀하의 경우 총 용역대금에서 귀하가 계약 완료시점까지 투입할 비용 임대료, 인건비(귀하의 인건비 포함), 기타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정한 손해액이 기수령한 착수금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면, 귀하는 착수금을 고객사에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고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트와 계약할 때 라이선스를 초과하면 어쩌죠?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기타(이미지 사이트)

| 피해내용 | 이미지 사용 계약에서 이미지 사용 범위에 관한 착오

| 사례경과 |

최근 이미지포털사이트인 C사에 당사가 고객을 위해 사용할 라이선스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C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확인 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C사 사이트를 이용중 당사는 C사로부터 한글이 아닌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바이럴마케팅 목적(블로그, 카페, SNS 등)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 라이선스를 초과하는 사용이므로 상당한 추가 금액(기준 견적 금액의 2 배 이상)을 내야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당사는 에이전시에서 사용하는 계약이 맞냐고 구두로 물어봤고, C사 측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특약라이선스에 대한 부분은 언급해주지도 않았고, 당사는 계약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C사는 이미 이미지를 다운받았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액 환불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증명되지 않는 한 일단 계

약내용으로 삼을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위 견적서에 따르면, 사용범위 중 '홍보용웹'에는 '홍보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되어있고 홈페이지의 사용 언어를 한글로 제한한다는 기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영어로 제작하든 기타 외국어로 제작하든, 이는 견적서상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바이럴마케팅 목적(블로그, 카페, SNS 등)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 견적서에 따르면, 사용범위가 홍보용웹, 홍보용모바일, 홍보용인쇄물, 광고디자인의 4종으로 되어 있고, 각 상세범위를 보아도 블로그, 카페, SNS 등 바이럴마케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이럴마케팅 목적(블로그, 카페, SNS 등)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이 가능하려면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계약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사는 홈페이지 제작 용도로 이미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용도는 견적서의 '사용구분'에 '납품(외주제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그럴 것이었다면 이미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귀사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귀사는 다운받은 이미지를 반환하고, C사는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구두계약 후 일러스트 작업했는데 임금이 계속 미지급되면 어떡하죠?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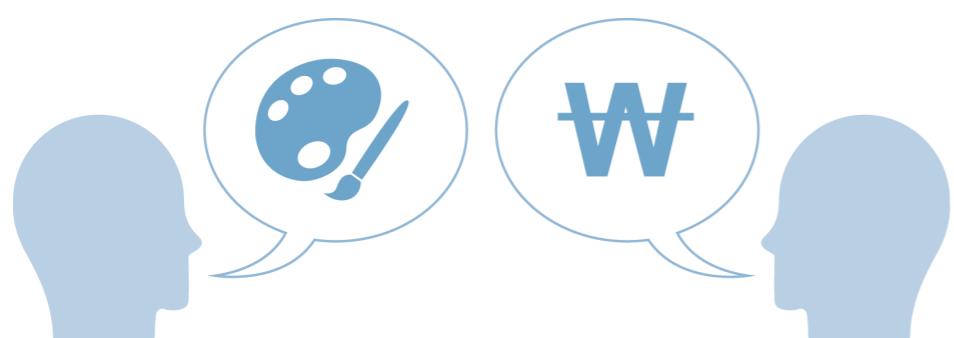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임금 미지급에 관한 자문

| 사례경과 |

본인은 프리랜서로 모 뮤지컬 스팟영상에 들어가는 일러스트 작업물을 수주 받았습니다. 발주자는 모 문화예술단체 감독으로 계약서 작성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시 구두로 임금이 늦어지면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상태에서 일러스트 사용시 저작권 위반임을 언급했으나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감독과 주로 대화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단체대표와 몇 차례 연락했지만 12월초까지 임금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먼저 보증의 방식에 대한 제한 때문에(민법 제428조의 2) 임금 지연 시 본인이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단체를 상대로 다음의 2가지 중 하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대금지급)의 이행청구 + 손해배상 청구(계약기간 중 이미 발생한 권리, 의무는 계약기간 만료에 관계없이 유지됨이 원칙)가 가능하며, 계약해제 후 목적물(일러스트) 반환청구 + 손해배상 청구(계약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므로 당사자 쌍방에 “원상회복” 의무를 발생시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만약 상대방에게 받은 것(선지급금 등)이 있다면 반환/정산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이 맞춤형 작품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기 어렵다면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채무의 존부 및 채무액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것 같다면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비용 및 절차 편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일방적 계약해지에 의한 이익 침해

| 사례경과 |

종이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표준계약서로 진행한 바 있으나 계약당사자의 다분히 개인적인 사유(대표인 자신에게 대우를 하지 않았다)로 인하여 일방적 계약 해지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진행중인 디자인 업무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애매하여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향후에 이런 류의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재발시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 자문이 요구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는 구속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이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 543조 제1항) 해제와 해지는 소급효의 인정여부를 제외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해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해제권은 주로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인정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표준계약서에 의한 약정해제권

역시, 합의해제를 제외하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채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해제권 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약정해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 “카탈로그 제작”이라는 귀사의 주된 채무의 불이행과 무관하고 표준계약서 상 약정해제권 발생 원인으로 포섭하기도 어려운 사유로는 계약 상대방에게 법정해제권 또는 표준계약서 제13조에 정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안에서 계약 상대방에게 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이 표준계약서 제14조에 의하여 계약 상대방의 자기 책임하에 행사되는 때로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전제에서 대처방법은 상대방이 법정해제권 또는 표준계약서 제13조의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제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단순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계약이 실효되지 않는 한 계약은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카탈로그를 납품하고 상대방의 반대급부(대금지급) 이행을 청구하거나, 역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W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모두 받으려면 어떠해야 되나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자문

| 사례경과 |

광주 소재의 모업체를 5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프디자인, 모션그래픽, 리플릿디자인 등 작업을 야간수당, 주말수당을 일체 못 받고 쭉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퇴직금 또한 받지 못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삼자대면을 하여 퇴직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부 지급을 받은 후 모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신고를 취하였는데 결국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도 같은 신고 건으로는 접수가 안 된다고 하여 지금껏 미뤄져 왔습니다. 제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런 일을 두번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 자문위원 의견 |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합니다. 아마도 진정 취하 시에 “형사처벌 희망여부”에 그 여부를 기재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철회가 불가하다는 고지를 받

았을 것입니다. 이는 고소를 취하한자의 재고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및 재진정이 접수되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을 다시 요구할 수 없다는 것뿐으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민사상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사적 절차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소액이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에 그 용도가 “무료법률구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은 근로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 아니한 채 진정을 취하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담당 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은 취하 후 신청 시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으나 감독관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체불액이 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급적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진정을 취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조건을 달아 절차의 보류 형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언제든지 절차를 개재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 작가와 협업할 때 표준계약서 작성법은 다른가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계약서 관련 및 대금미결제 대응방법

| 사례경과 |

일러스트 및 캐릭터 저작권 소유 작가와 협업을 할 때 표준계약서 작성법과 내용 변경원칙 등이 궁금합니다. 일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이 체불된 사례가 있어(구두계약) 이에 대해 대처방법과 앞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저작물의 창작 시의 문제, 특히 저작인격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만 정하여지는 내용이 많아 저작물 창작 관련 계약시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용역 관련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저작권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서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계약서가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문구가 잘 정비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업을 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위에 언급한 사항 외에 상기 약식에

서 “보수”에 관한 조항대신 “공동 창작한 저작물의 이용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조항을 합의되는 내용대로 바꾸어 넣으시고, 그밖에 위탁/수탁 관계가 아닌 협업 관계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소소한 내용 변경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저작인격권의 귀속과 양도제한에 관한 법률규정은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최소한 그 부분 만큼은 저작권법의 문구를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는 정도로만 작성하셔야 추후 분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의 존재 및 상대방의 의무위반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워 법적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가급적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속적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급여 미지급에 관하여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손쉽게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부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하여 추가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께서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형사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담당 감독관에게 법률구조공단 제출용이라 말씀하시고 제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 소송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과 범위를 넘겨 일하고 잔금도 계속 미루는데 어떡하죠?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계약기간과 계약범위를 벗어난 계약

| 사례경과 |

회사는 A기업으로부터 단기 개발 일정으로 디자인개발을 의뢰받았습니다. 내용의 검토결과 단기 간 개발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견적을 내고 개발 내용 및 스케줄 논의를 위해 미팅을 가졌고, 이후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의 계속된 수정으로 본 회사는 개발된 기본 기획안을 수차례 걸쳐 변경을 하는 것과 더불어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레 계약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개발의뢰 시기보다 한 달 여 뒤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A사는 협의된 개발 일정에 맞지 않게 계속된 내용수정과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 까지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수차례에 걸친 수정을 한 후에야 개발이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본 회사는 당초 계약기간보다 개발 일정이 연장된 만큼의 보상이 마땅하지만, 그 보상은 불구하고 잔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될까봐 개발 종료 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잔금 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개발이 끝난 뒤 담당자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결과보고서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만 계속해서 하였고, 자연스레 잔금처리는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잔금 결제는 이루어졌지만, 계약보다 늦어진 개발기간과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잔금처리 건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 자문위원 의견 |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귀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귀사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개발 일정이 길어지고 잔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면 귀사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가 길어진 개발 일정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결과 보고서 상에서도 잔금 결제만을 요구한 점 등은 귀사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귀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 과연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인지에 대한 부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계약 시 상대방의 의무에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귀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포함하고, 과다한 내용 수정 및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사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스전문점 디자인 사용비용 지불계약을 위반하면 어떡하죠?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디자인 전문회사

| 피해내용 | 계약 위반(사용 범위 관련)

| 사례경과 |

N사는 2016년 4월 27일 주스전문점(브랜드)과 디자인 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디자인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견적을 책정할 때, J브랜드 측에서는 주스전문점을 프랜차이즈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 함에 따라 디자인 개발비용을 N사가 부담하면,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할 때마다 그에 따른 디자인 사용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기로 상호 동의 후, 이를 감안하여 개발비 일부만 받고 디자인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시작 무렵, J브랜드 측에는 4인의 공동대표가 있었고, 그 중 '조OO' 대표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람이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제6조의 10%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져있고, 구두 상으로 10%를 이야기 한 뒤 수기로 적어 놓았는데, N사측 계약서에는 10%가 수기로 적혀 있고, J브랜드측 계약서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J브랜드 측에서 위 계약에 기한 귀사의 도안은 사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에도 해당할 것인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주장은 선택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복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쟁점으로는 10%의 대금지급의무가 특정 내지는 입증 되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주장에 따르자면 구두로 그에 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문서인 계약서에는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우리 측 계약서에 '10%'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대방 회사의 계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귀사의 계약서 중 그 부분에 상대방 회사의 날인이 되어 있거나 상대방 회사가 그 부분 작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10%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당시 동석했던 당사자의 증언이나 당시 발언을 녹음한 자료, 사후라도 상대방 회사측의 사람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 확인서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다면 10%의 이익금은 청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재판으로 간다면 계약 체결의 경위, 디자인시안의 단가, 상대방 회사의 관계, 통상적인 계약 단가 내지 조건 등을 추가로 주장, 입증하여 귀사가 그렇게 적은 돈만 받고 시안을 제작하여 공급해 줄 리가 없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디자인 종료시점에 사이즈 변경으로 재작업할 경우 보상방법은 없나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제품의 부품사양의 변경에 따른
업무 증대

| 사례경과 |

디자인작업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차례 겪었던 제품사양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 계약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정확한 사양을 명기하지 않고 ○○○ 제품디자인개발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디자인의 종료시점에서 디스플레이인치의 변경(7인치에서 10인치로), 배터리사양의 변경(1000mA에서 3000mA로) 등으로 디자인작업을 재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간혹 제품의 사이즈가 두배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여건상 제품의 스펙이 부품의 가격과 수급의 어려움으로 변할시 변경된 사양으로 작업을 다시 해준 사례가 몇 차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디자인을 진행하는 디자이너의 업무량을 증대시키고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이므로 최초로 정한 스펙의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보상의 방법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기하는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변경시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귀하의 사례와 같이 이런 일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의 미비, 발주자와의 관계, 후속 계약 등에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무형작업인 디자인 개발작업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 기존 업계의 관례 등의 사유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지금껏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업계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개선되어야 종국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개략적으로나마 업무의 정량평가회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의 디자인 작업이라면 숙련된 인력 몇 명이 몇 시간 정도를 작업해야 되는 양이라는 등으로 계량화 된다면 거래업체에 그에 따른 상황의 설명, 대금의 증액청구, 소요 기간의 도과에 따른 지체상금 채무면제 등에 활용될 것이며, 계약서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초 디자인사에 제공된 시안에 대하여 발주사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되는 과업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주사가 부담합니다. 단, 구체적인 비용의 결정은 양사의 합의에 의한다.” 정도로 명시하고 변경 시에 적극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요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정량평가된 수치를 근거로 대금증액을 요청하신다면 발주사도 무작정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사가 계약 취소 후 타업체에서 당사 디자인을 무단인쇄해도 되나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계약 취소

| 사례경과 |

당사는 고객사인 B업체의 카탈로그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고 여러 번의 교정을 거쳤으나 최종 제작이 취소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거래하던 업체라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제작취소 후 당사의 디자인 시안을 타 업체에 주어 당사의 카탈로그 디자인을 그대로 인쇄 작업했다는 얘기를 B업체 총무책임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B업체에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B업체는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귀사의 편집 및 미술저작권을 제 3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자문위원은 상대방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 꼭 필요한 증거확보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귀사는 피해액이 소액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금명령신청보다 제1항의 고소를 통하여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제의하지 않는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받으셔서 집행을 하셔야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제작비를 전액 선결제했는데 안만들어주면 어쩌죠?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계약 불이행

| 사례경과 |

회사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 꽤 잘한다는 홈페이지 디자인 회사를 찾아 작업을 의뢰했지만, 홈페이지 제작 회사가 여러 건을 맡아서 작업하는 바람에 저희 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홈페이지 디자인 회사에 법적조치를 취하여 돈을 다시 받아냈고, 그 후 다른 홈페이지 회사를 통해 개인 프리랜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리랜서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전문가로,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제작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고 모든 금액을 미리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진행하던 중 저희 회사가 피드백을 늦게 줘서 못했다, 통신판매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며 작업시간이 점점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프리랜서는 본업을 바꿨다며 일을 안 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금액을 다 지불했으니 완성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끝까지 안 해주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홈페이지를 확인해봤더니 홈페이지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결제 시스템을 안 넣어서 다 무효가 되었다. 관리를 안해

서 삭제했다라고 말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결국, 소개를 받았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프리랜서는 나한테 전화 온 적이 없다고 모른 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관련된 자료, 이미지, ID, 사업자번호를 다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귀사는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프리랜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사는 회사 홈페이지 제작 완성을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었고, 또한 그 금액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인은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여 귀사에게 완성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완성물도 없이 현재 귀사의 홈페이지는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사의 불완전한 지시에 의하여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귀사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홈페이지 완성물을 귀사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이 안돼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선금회수방법 없나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계약 해지로 인한 선금

| 사례경과 |

당사는 얼마 전 기업체로부터 3,000만원 규모의 모바일 앱 구축용역을 수주받았습니다. 개발기간이 3개월로 촉박해서 당사는 일부 개발파트를 하청(900만원) 주었습니다. 하청업체에 선금(400만원)을 주고 얼마 후 1차 결과물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하청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며 작업 중이라 하였고, 막상 기업체에 납품하여야 할 시일이 다 되어서야 결과물을 보여주었는데, 작업이 10% 정도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하청업체는 개발에 대한 기획서 등 문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작업을 못한다며, 이대로 중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일정을 못 맞출뿐더러 진행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환경분석, 요청사항분석 등)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달라고 하며, 계약해지를 하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라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정상 계약해지를 하고(서류로 발송), 다시 그 개발파트를 진행하여 우여곡절 끝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하청을 진행한 부분의 선금(4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계약을 맺은 경우 이행지체, 이행불능 사항이 생기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해제 또는 합의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귀사는 상대방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사유를 설정하였을 것입니다.

귀사는 계약 선금으로 400만원을 주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업체는 개발에 대한 기획서 등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으므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의해지에 귀사가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하청업체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00만원 선금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부가 판별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청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물을 귀사에 납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가치도 산정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체 대여에서 서체 사용까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세한 것들을
깔끔하게 디자인해 드립니다

T CI 개발에 정품이 아닌 폰트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디자인전문회사/ 기타

| 피해내용 | C사의 CI 개발에 D사의 폰트가 정품구입없이 사용되었다는 주장

| 사례경과 |

당사는 2004년에 C사가 발간하는 출판물에 들어가는 CI를 개발해준 바 있습니다. C사는 당사로부터 납품받은 결과물을 pdf로 구워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체프로그램 개발·판매회사인 D사로부터 저작권침해단속을 위임받았다는 법무법인이 최근 이를 보고, 웹상에 올려있는 그림에 D사의 폰트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사에 서체프로그램 정품 보유여부, 정품이 있을 경우 E-Book 용으로 추가 사용 허락권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C사에서 서체프로그램 자체를 홈페이지에 이용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발주하여 나온 결과물(이미지)을 이용할 때도 정품을 구입해야 하나요?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 사용권 구입을 해야 한다면, 디자인 용역 발주를 할 때, 디자인 전문회사에서 작업한 결과물에 이용된 모든 서체프로그램을 발주자 겸 이용자도 구매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당사가 2004년 작업했을 당시는 서체프로그램 회사에서

서체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던 시기로 서체프로그램 구입 없이 작업하였으나, 당사는 그 후, 해당 서체프로그램 정품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서체(폰트) 도안(이미지)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서체프로그램(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순히 서체가 사용되었다 해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서체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여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서체프로그램 회사가 서체프로그램의 이용허락 범위를 지정하여 판매하였는데, 사용자가 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본건의 경우 C사가 귀사에 CI개발을 의뢰하였고, 귀사는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I를 개발하여 이를 C사에 양도하였으며, C사는 받은 결과물을 이미지 형식(JPG)으로 구워서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라면 서체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습니다. C사는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C사는 서체프로그램을 구입할 이유도 없고, 사용용도에 따라 추가 사용권을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설사 귀사가 불법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I개발을 하였다 해도 C사는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T 서체를 실수로 사용해도 저작권침해가 성립되나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서체를 허락없이 사용했을 때의 대처법

| 사례경과 |

최근 서체개발회사 D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사가 올해 초 제작한 디자인물에 사용된 서체가 D사의 개발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당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받을 당시 클라이언트사에서 해당 서체와 비슷한 서체를 요구하였는데,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체라서 인터넷에서 무료폰트라고 배포되어있는 폰트를 찾던 중 개인블로그에서 배포중인 D사의 서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D사는 당사에 지금이라도 서체를 구입하든지 1회 사용료를 내든지 택일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D사의 서체를 그날 1회만 사용하였으며 차후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침해가 성립합니다. 귀사가 사용한 D사의 서체가 무료폰트라면 귀사의 사용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관건은 그것이 무료폰트냐 하는 것입니다. 귀사로서는 귀사가 입수한 개인블로그를 검색하여 무료배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무료배포가 아니라면 귀사의 위법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무료배포라 하더라도 배포자가 무료사용의 범위를 한정하여 허락하였고, 귀사의 사용이 그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면 역시 귀사의 사용은 위법이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침해로 인정될 경우 귀사가 단 1회 사용하였을 뿐이고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지라도 합의금은 저작권자가 정한 금액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은 아니고 협상력을 발휘하여 여러 억울하거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합의금액을 낮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노무

세무에서 회계, 교육, 관리까지
기업경영과 관련된 세세한 규정을
완벽하게 디자인해 드립니다



4대 법정 의무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궁금증

| 사례경과 |

법정 의무교육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4가지가 맞는지, 이 외에 받아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사업주가 받아야할 법정의무교육 4가지 (근거조문, 교육주기, 과태료 등)

①성희롱예방교육

근거조문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1항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미실시 처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퇴직연금교육

근거조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교육주기 및 대상 : 연 1회 이상 확정급여형 (DB형) 또는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미실시 처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개인정보보호교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8조)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미실시 처벌 : 처벌조항 없음

④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 시 어떤 유형의 법인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법인전환을 위한 상담

| 사례경과 |

법인전환 시 어떤 유형의 법인(유한회사, 주식회사)이 차후 기업방향(전반적으로 사업영역 다각화에 따라 자회사 설립 및 자회사 지향)에 있어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업구조에서 초기창업자 및 동업자와의 지분설정 및 정관 작성에 있어 자문 받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입니다. 사원의 수가 일단 최소 2명부터 시작해서 최대 50명을 넘지 못하지만, 주식회사는 최소 1인부터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기관[(주식회사-주주총회, 이사회), (유한회사-사원총회)]이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주총회가 아닌 사원총회로 대신하며, 이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섞어놓은 유형과 비슷합니다.

셋째, 설립절차의 차이. 주식회사는 설립할 때부터 많은 주주와 이해관계인을 가지기 때문에 설립 절차(발기설립, 모집설립)가 까다롭지만, 유한회

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발기설립)가 간단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주주의 모집, 주식상장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주식회사를 선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회사의 정관 작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회사정관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정관의 총칙을 비롯하여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및 주식의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작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존재하므로 주위 동종업종의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면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표준정관을 비치하여 법인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지분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창업자와 동업자가 모두 주주로 참여하시고 서로 협의하여 지분비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절차에 의해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이 설립되고 3개월 이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포괄양수도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법인기업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제외 및 각종세제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바, 자산 및 부채의 규모가 큰 개인기업이면, 반드시 세무사와 미리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조언합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 세무, 회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절세 방안을 위한 세무 회계 관리

| 사례경과 |

세금 절세를 위한 세무 회계 관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신청기업의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한 업종이고 신청일 현재 고용 종업원 수는 13명으로 절세를 위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청기업이 제시한 종업원 수 대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급여는 부족한 금액으로 보여지고, 더불어 종업원에 지급한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가 상당하여 복리후생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청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상당하여 인건비에 대한 각종지원제도(두루누리 사회보험, 고용지원금 등)이용 및 종업원에 대한 적합한 급여설계를 통한 비용절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청기업의 급여 담당자는 근로소득 비과세급여에 대한 개념 파악 및 기본급, 직무급에 우선하여 비과세 급여를 먼저 보수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 직무급으로 급여를 배분하는 것 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소득 비과세급여의 경우 근

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아 소득 세를 절감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비과세 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예시>

①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 소유차량일 것, 시내출장 등 회사의 업무에 해당차량을 사용할 것,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것, 실제발생한 경비를 별도로 정산 받지 않을 경우 월 20만원이내 금품

② 식비 :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내 금품 등 가능

③ 자녀양육비 :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이내 금품 가능

④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수당 : 총급여액 25백만 원 이하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 범위내 가능

⑤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 중소기업 또는 벤처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이내의 연구보조비 등

⑥ 기타 비과세 항목 등 : 일직, 숙직료, 제복 및 작업복 등, 벽지수당, 취재수당, 위험수당, 국외근무수당 등 법률에 의한 각종 보상금 등이 해당됩니다.



회계, 세무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경영 관련 회계, 세무(세금절감) 자문요청

| 사례경과 |

본사는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내부에 회계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회계관련 업무는 대표가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디자이너가 분업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회계관리 및 세무업무(세금절감) 관련 자문이 필요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신청기업의 경우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표만이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료를 준비, 정리하여 회사내부관리 및 세무사사무실에 자료 제출하기를 권유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체의 경우 사업관련 수입, 지급 및 사업과 무관한 개인관련 수입, 지급을 한 개인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사업용자금인지, 개인용자금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바, 가급적 사업용도로 이용하는 통장을 별도로 정해두기를 권유합니다.(예시: 광주은행(사업

용 통장), 기업은행(개인용 통장)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을 정하시면 자금이 유입되었을 경우 통장 적요란에 빨간 볼펜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통장에서 자금이 지급될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기를 권유합니다.(예시: 통장내역 2,500,000원 입금 ○○전자의 2016.08월 광고 간판 설치 거래대금 입금)

처음에는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시고 분기에 한번 정도는 통장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가지고 계시고 한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정도 적요란에 2번의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내부관리하기를 권유합니다.

비용의 지출시 사업용도와 개인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하고 사용하기를 권유합니다. 신용카드 전표를 모아 신용카드 전표 맨 밑에 빨간색 볼펜 등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를 권유합니다.

전표 맨밑에 ○○전자대표 아무개와 저녁식사 비용지급 시에 대한 구분을 해두어 원재료 매입관련 자금인지, 복리후생비, 접대비, 수수료비용 등 확인하여 분야별로 자금집행내역을 확인하기를 권유합니다.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수수료 등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수입, 지출에 대한 엑셀관리, 매출, 매입장 관리,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등을 병행하시면 회사경영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원들을 장기근속하게 만드는 좋은 방안 없을까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디자인 전문회사

| 피해내용 | 인력부문(장기근속자 확보가 어려움)

| 사례경과 |

당사는 디자인 전문회사로, 업계에서 나름대로 광고주들에게 평판도 좋고, 디자이너들의 경쟁력도 있고, 직원들도 즐겁게 일하는 회사에 속합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회식도 자주하고, 더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이직률도 높아서 큰 고민거리입니다.

대다수 디자이너 인력이 1년 정도 근무 후 퇴사하여, 당사에서 쌓은 1~2년의 경력을 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장기근속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인력은 디자인 전문회사의 디자인 역량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써, 잊은 이직으로 인한 장기 근속자 부재로 기업 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력자를 채용하면, 경력년수에 비해 개인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입직원의 경우엔 1년 정도 실무경험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놓으면, 이직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퇴직금 등 재정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 및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 기업에 오래 근속하지 않고 빈번하게 이직하는 경향이 많은데 ① 타 기업으로 이직시 이전 직장보다 높은 급여 ② 이전 기업의 근무환경(근무시간) 불만족 ③ 담당업무 불만 ④ 자기개발 기회 불만족 ⑤ 근무지역(출퇴근) 불편 ⑥ 다른 직원과 비교시 낮은 직급 ⑦ 기업의 비전 제시 낮음 등이 주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① 동종업체와 비교시 균형 잡힌 급여 제시 ② 근무환경 혹은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도 중요하지만 급여 못지않게 젊은 세대들은 근무시간이나 여가활용을 중요시 하므로 근무시간 단축, 1년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15일)를 직원이 원할시 사용하는 방안 ③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내부적인 기술전수, 정부에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 ④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숙사 제공, 사무실 근처 오피스텔 제공, 통근버스 제공, 재택근무, 자유 출퇴근 시간제 활용 ⑤ 1년이상 혹은 일정한 근속시 우수사원 표창,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주택구입비용 및 학자금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상여금,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⑥ CEO의 직원들을 위한 계속되는 비전제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에 제시해 드린 방안들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장기근속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직원을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법인회사 전환을 위한 애로사항
자문 요청

| 사례경과 |

본 회사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법인화 전환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의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속중인 직원의 근태가 회사와 맞지 않아서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예방차원에서 애로사항을 자문 받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근로 조건하에 법인

회사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인별로 사직서를 받으시고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한 동안 모든 근로관계에 따른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법인 회사로 승계된 이후에는 처음 입사하는 걸로 하여야 퇴직금과 연차관계 등의 인사노무 문제에 있어서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측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 집니다.

해고를 하기 전에 권고사직을 하여야 할 것이고,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엄연히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권고사직서를 직원이 자의로 제출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절차면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해고사유와 시기 등을 반드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어떤 금액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 사례경과 |

D사는 2016년 디자인지원사업 과제사업에 선정되어 수혜기업 A로부터 자부담금 4,750,000원과 디자인센터 지원금 19,000,000원 총금액 23,750,000원(부가세 10% 별도)을 사업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종료 후 지원금중 간접비 예산 10%에 해당하는 2,375,000원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650,000원을 사용하고 약 1,709,753원 정도의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행기업인 D사는 지원금 반납과 함께 수혜기업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 협약금액 23,500,00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소진한 예산을 제외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수행기업이 수혜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대가는 수혜기업과 지원금을 재원으로 수행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용역 수행결과물 소유권이 수혜기업에게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수행기업이 수혜기업에게 용역제공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세법 규정에 의하면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수행기업이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혜기업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액과 센터로부터의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에서 일부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라면 최종 정산후 정부지원금(최초지원금-지원금 반환금액)이 수행기업이 지급받는 최종 용역대가가 될 것이므로, 최종 정산후 정부지원금과 수혜기업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세무사례를 검색한 결과, 동일한 사항에 대한 세무사례가 없으므로 국세청에 서면 세무 질의를 받으시는 것을 고려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창작료의 적합한 기준선은 무엇인가요?

|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분쟁대상 | 정부공공기관

| 피해내용 | 디자인 예산편성에 관한 건

| 사례경과 |

디자인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B2B 대상 디자인 용역과 정부과제 등의 용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 기관(정부)에서 실시하는 디자인 용역(공공 / 환경 / 조형물 / 디자인 실시설계)에 있어서 디자인에 대한 용역비용에 적정 기준선이 없어 기관 공무원분들과 산출내역 근거로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창작료는 예산 항목에 없어, 모든 부분을 인건비로 산정하라고 하니 아무리 전문기술적으로 일위대가 산정을 하여도, 디자인 전문기업으로서의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국책사업 중 디자인의 비중이 높은 용역은 산출근거에 '디자인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창작비용으로의 적합한 기준선을 들 수 있는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국책사업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용역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원가 구성비목은 아래에 첨부하였고, 크게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며, 동 비목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디자인비용(창작료)은 해당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목에는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관리비, 이윤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 산정시 인건비 기준단가에 참여율 변동,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안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및 참여율에 따라 증가하여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6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용역원가 중 일반관리비율이 종전의 5%에서 6%로 상향 변동되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일반관리비율이 6%로 상향 변동되었습니다.





팀원 명의의 펀딩수익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펀딩수익금 관련 회계

| 사례경과 |

펀딩수익금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입니다. 팀원이나 개인도 가능하다고 하여 팀원 명의로 계약을 하였는데, 개인 통장으로 펀딩 수익금을 받는 것도 가능한지, 처리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사업장은 아무 곳이나 상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물품판매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고 지원금 물건을 제작하여 보내드렸는데,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펀딩수익금을 팀원의 개인통장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 주체가 팀원이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환의무 등 귀속책임이 팀원에게 있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펀딩수익금은 법인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법인통장으로 돈을 넣어 처리할 경우, 지출내용에 대한 계약을 처리해야하고, 만약 대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펀딩은 매출의 증대, 수익의 발생 등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처에 차후에 보상을 지급해야하는데, 보상의 지급방법은 주식 또는 이자율 지급하는 방법, 자산에 대한 라이선스, 기술 등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가능하며, 학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물품판매 대가를 선수취한 것은 펀딩이 아니라 물품대금에 대한 선수금임을 알려드리며, 법인명의 통장으로 대금거래를 하시고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증빙 자료를 구비하실 것을 자문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재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세금계산서 관련 회계

| 사례경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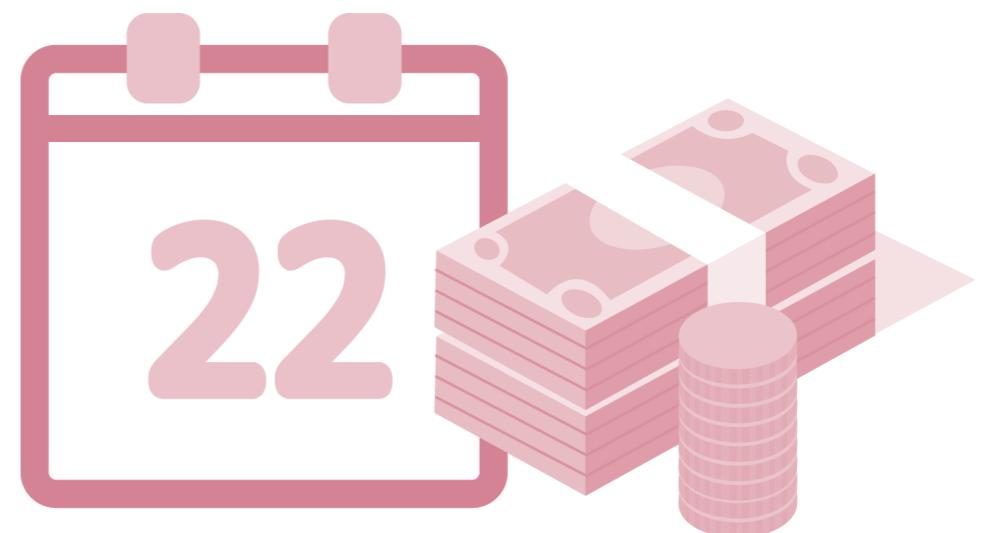
거래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 부과가 되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거래처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행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만약 이런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 만약 부과 된다면 적용 기준 일자(기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조)에서 정한 수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재화나 용역의 환입, 계약의 해지,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이 퇴직하며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실업급여 및 지원급 관련 노무

| 사례경과 |

1년 이상 근무를 하던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성실하게 근무를 하던 직원이었고 관련공부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에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바로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할 의사가 없다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본인을 퇴사 처리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네요.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 좋은 방법은 없나요? 저희 회사는 일·학습병행제를 하고 있어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직원은 일·학습병행제 해당 직원은 아닙니다만 혹시 연계되어 기업에 타격이 있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기업에 아무 지장이 없이 직원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차후에 이런 경우 발생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저희 회사 같은 고민을 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명한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귀사의 퇴직 예정 근로자(이하 “갑”)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갑의 경우 학업을 위한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바, 이는 실업급여 해당 사유에 들지 않습니다. 갑은 동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갑이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① 구직급여 반환 ② 추가 징수의 금액을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이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면, 귀사의 경우 퇴직 예정인 근로자가 일·학습병행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및 2호『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의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제62조 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의 징수가 가능』

<고용보험법 제62조 2항>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이면 사업주와 근로자간 연대 책임』을 규정.



여직원이 출산 휴가 후 복직을 약속해 급여를 지불했는데 퇴사하게 되면 어떡하죠?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출산 휴가 관련 노무

| 사례경과 |

2014년 6월에 입사한 여직원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신청하여 2015년 9월 복직을 약속을 받고 출산 휴가 3개월 동안 급여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8월 말경 복직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퇴사 처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 등의 비용은 기관이든 직원이든 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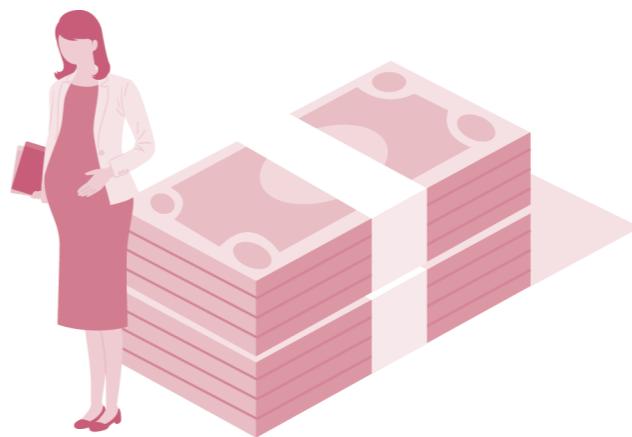
회사 입장에서는 복직이 힘들 것 같아 퇴사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 스스로 복직을 꼭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유급으로 처리했는데 어떠한 재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려는데 퇴직금 문제, 세금 결사 문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혹시 회사에 지원되는 제도가 있나요?

| 자문위원 의견 |

귀사가 출산휴가 기간 중(6개월) 직원에게 지급한 3개월간의 임금에 대한 정산 가능 여부를 보면, 고용보험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지급시기 경과로 인해 대체 지급청구가 불가합니다. 3개월간 지급하신 임금 중 60일치 임금을 제외한 추가지급분에 대해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실질적인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① 근속기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의 육아휴직 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② 평균임금의 산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기간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판매장을 오픈할 때 법인으로 계약하면 더 유리한 점이 있나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판매장 계약시 법인 계약 관련 세무

| 사례경과 |

법인으로 처음 창업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판매 매장을 다른 지역에 더 오픈할 예정입니다. 법인으로 계약 시 세무부분에서 법인이 더 유리한 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점, 사무실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지원금은 회계처리상 어떤 항목으로 잡히는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계약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은지도 자문위원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

판매장 계약시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단순하게 적용세율을 볼 때 법인의 경우에는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반해서 개인은 6%~38%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는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익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 세율차이로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 사업비를 지원받는 법인이 신규 지점 및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개인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게 된다면, 법인과 개인과의 거래를 통해 소득을 몰아주기식 등으로 편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 내에 지점 및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제3자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에서 지점 또는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특별한 영향은 없으며, 모두 법인의 재산 안에 포함됩니다. 법인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장대리인(회계사무실)은 수령한 시점에 영업외 수입(잡 이익 등)으로 계상됩니다.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신설했는데 회계절차와 비용처리는 어떡하죠?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해외 별도법인 설립 회계 및 계약서

| 사례경과 |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현지법인을 신설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신설에 따른 운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별도의 법인 신설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 지출이 지속되고 있고, 고정 비용 이외에도 집기류, 유지비 등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현재 컨설팅 업체를 소개받았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환경 특성상 영수증 미첨부 및 현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회계상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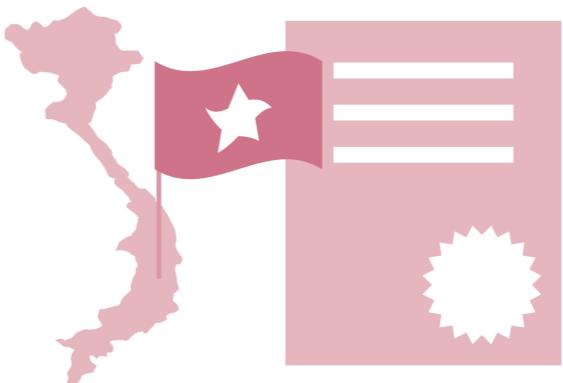
차 및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체류 주재원 급여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직급별 평균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세무 관련된 업무는 한국에서의 방식으로 최대한 항목별 지출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모아서 분류하여 두고 연 1~2회 정도 현지 회계/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면 경비 절감 및 업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업무가 증가되면 연간 계약으로 세무 업무를 의뢰해 두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점을 조언드립니다. 향후 현지 법인 설립 및 계약 관련 업무진행 시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요시에 법무법인의 베트남 현지 제휴로 펌에 의뢰해 현지에서 법적, 세무적, 노무적 업무 컨설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자문해 드립니다.





인쇄사고 핑계로 결제를 미루는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인쇄물 검수확인

| 사례경과 |

모 기관에서 의뢰받아 책자를 제작했는데, 문제는 인쇄 작업에 들어가기 직전 가제본으로 최종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몇 번을 확인과 검증을 요청했고, 해당 담당자는 다 됐으니 바로 인쇄에 들어가자고 하고, 저 역시도 일정이 급해서 그 말만 듣고 바로 인쇄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책자가 나왔고, 저희는 납품을 했습니다.

결과물을 받고는 클라이언트의 담당자와 많은 사람들이 적은 예산과 짧은 일정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만족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머지 잔금을 청구했고,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납품한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책자에서 작품을 냈던 사람들의 오타가 발견되고, 이미지 해상도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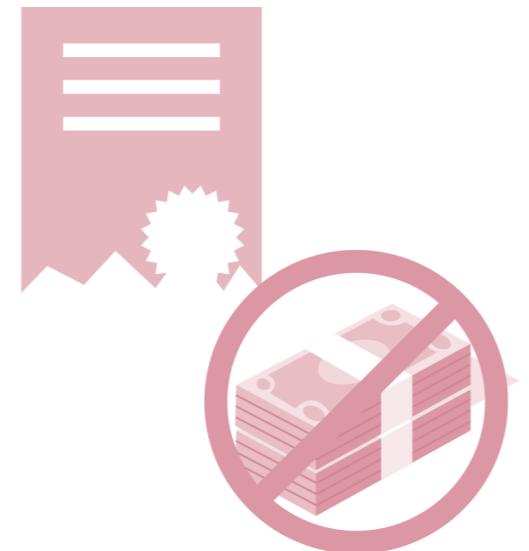
저는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다고 했으나, 단순한 오타가 아닌 좀 큰 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책자의 작가와 이름이 뒤바뀐 것인데, 인쇄편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십 명의 인물과 이름이 일치되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교정을 요구했었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특정 페이지에 대한 재인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책자의 특성상 부분적인 재인쇄는 불가하고, 전체를 새로 찍어야 한다고 했으나, 해당기관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잔금 지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귀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타 회사에 납품을 하는 경우입니다. 클라이언트회사(도급인)와 상호 협조하여 빠듯한 일정에서 도급인 회사의 담당 직원과 함께 확인과 검증을 거쳤고, 또한 도급인 회사의 직원도 인쇄에 들어가서 납품하라고 하였다면,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완성물이 납품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도급인이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타

무단인쇄에서 카피제품까지 법률피해의 다양한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해 드립니다



광고주가 디자인을 도용해 무단으로 인쇄해도 되나요?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광고주가 당사가 제작한 서적을
도용해 무단으로 인쇄함

| 사례경과 |

당사에서 인쇄 직전 상태로 편집디자인을 마친 서적을 광고주가 50% 이상 그대로 도용하여 인쇄 했습니다. 당사에서 2013년도에 편집한 서적은 클라이언트측의 내부 문제로 인쇄 직전 서적 제작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당사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내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서적을 제작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클라이언트는 저희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희와 서적 제작에 대해 협의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당사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수십 장과 디자인 형식을 대부분 도용하여 서적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편집비 및 감수비를 상정하여 클라이언트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클라이언트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증 서적 제작에 사용된 자료가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기에 제작 서적에 실린 글과 사진의 저작권 권리가 클라이언트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최근 제작한 서적은 2013년에 당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교정용으로 보낸 PDF파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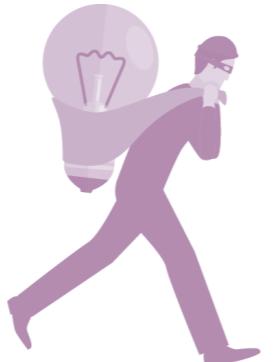
이용하여 편집 인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에 대한 원본파일은 당사에 있으며, 사진 촬영작가도 당사에서 고용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자문위원 의견 |

귀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했다거나 책자의 일러두기를 인용하면서 마치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의 권리가 클라이언트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귀사는 클라이언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귀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귀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투입한 비용 및 용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귀사가 얻을 수 있었던 총 비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는데, 그 범위는 전에 보내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 일 경우 정식재판에 비해 보다 간편한 소액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을 안 하고 작업했는데 대금 지급을 않네요. 어쩌죠?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대기업

| 피해내용 | 용역대금 미결제 및 계약서와
관련한 마찰

| 사례경과 |

당사는 최근 건축물 관련 그래픽과 로고, 그래픽 작업을 F사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하였고, 업무는 모두 문제없이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용역대금 결제 및 계약서와 관련하여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당사가 작업 착수 전 F사에 계약과 선금에 대해 문의했을 때, F사는 건축주와 F사가 우선 계약을 할 테니까 이후에 F사와 당사를 포함한 외주업체가 계약을 하자고 했고, 대금지급은 그 이후 가능하다하여 계약하기 전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건축물 오픈 예정일 한달 전까지 당사가 맡은 디자인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F사와 건축주의 사정으로 3개월간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당사의 작업량도 늘어났지만 프로젝트 완료를 우선하여 어렵사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후 F사에 결제를 문의하니 건축주가 아직 대금 지급을 안해주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제지연에 대한 답변도 속상했지만, 더 황당한 것은 일이 다 끝난 후에 보내온 계약서의 내용

입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당사에 불리한 데다 F사가 건축주에게 대금을 못 받으면 당사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디자인소유권은 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그냥 F사에게 있다는 등 노예계약 수준의 내용이어서 수정 요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않고 시간만 가는 상황입니다.

협의된 업무범위보다 늘어난 업무량과 기간으로 오히려 추가비용을 청구해야할 입장에서 용역대금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을 상황이 되니 몇 달 동안 주말도 없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을에게 불리하기만 한 부당한 계약서를 날인해야 결제 품의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 자문위원 의견 |

F사의 태도로 볼 때 현실적으로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변제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귀사와 F사 사이에는 계약성립이 인정되고, 귀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한 이상 귀사는 F사를 상대로 용역대금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시 추가 용역대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역시도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한 소송은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절차에 따르는 바, 정식재판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지만, 만일 소송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용역비를 못받았는데 어쩌면 좋죠?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분쟁대상 | 중소기업

| 피해내용 | 디자인용역비 미수금 피해로 도움 요청

| 사례경과 |

A사는 2015년 선물세트 디자인을 당사에 의뢰했고, 당사는 견적서와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20일 후, 샘플제작용 원본데이터(ai)를 보낸 후 여러 번의 시안수정을 거쳐 완성된 디자인 데이터를 A사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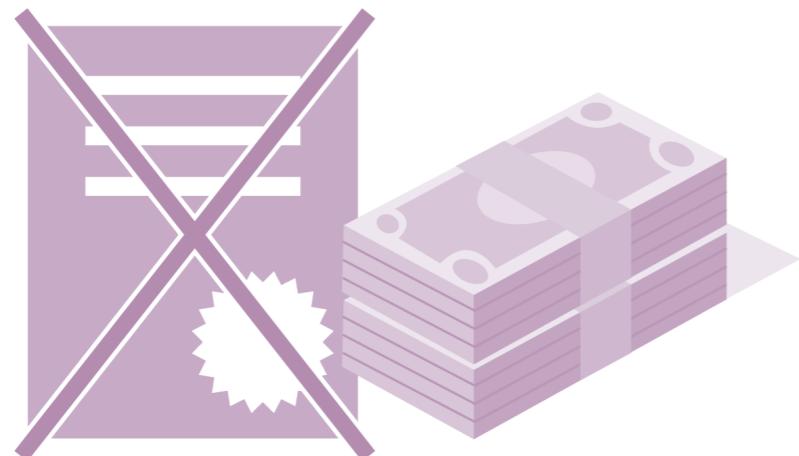
그런데, A사는 당사에서 받은 디자인 데이터로 자신들의 인쇄 거래처에서 인쇄를 하고 납품까지 완료하고, 용역비 지불을 요구하자 내부적인 문제

가 있다며 해결되면 지불하겠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문위원 의견 |

디자인개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발주자는 디자인업체의 디자인개발에 대해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사의 의뢰에 의해서 귀사의 디자인개발이 시작되었고, 귀사가 제시한 견적서나 공문으로 발송한 단가가 있다면 귀사는 A사를 상대로 귀사의 디자인개발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건별로 디자인개발의 진행 정도가 달라 대금 역시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완성된 디자인결과물을 보냄으로써 귀사는 디자인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초기에 보낸 견적서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자사제품을 카피하는데 최선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분쟁대상 | 기타

| 피해내용 | 지식재산권 침해 및 대금결제 미지급

| 사례경과 |

당사의 경우 최근 2가지 난감한 사항에 처하게 되어 자문위원님께 문의드립니다.

첫째, 중국에서 자사제품의 카피제품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외 짹퉁 제품을 한국의 유통사에서 수입하여 유통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둘째, 제품을 발주 받아 납품 후, 대금결제가 미지급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100만원 미만의 소액 건에 대해 매번 계약서를 쓰기는 힘든 상황)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서류나, 추후 문제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

요즘들어 중국산 카피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이 부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처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카피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경우

그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타인에 양도하는 행위는 특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독점배타적 권리의 침해 행위가 되어 권리자가 관련 법률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전제적인 조치로 관세법상의 지식재산권 신고제도가 있는데, 이는 특히 침해 가능성 있는 수출입자 또는 해외 생산/공급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고(관세법 제235조 제1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신고제도를 두고 있으며(관세법 제 235조 제2항), 신고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침해우려물품의 수출입신고가 있을 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통관보류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35조 제3항)

이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도안내 인터넷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매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시는 경우 디자인진흥원 표준계약서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준비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디자인 법률히로人

디자인 법률,
지역별 성공사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디자인산업의 성공신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
대한민국 디자인 법률히로人
디자인법률자문단과 함께하면
대한민국 디자인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3

간략한 사례유형(지역별)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광주 및 호남 지역
- 대구 및 경북 지역
- 부산 및 경남 지역

대한민국 디자인 법률히로이!

디자인법률자문단이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드립니다

서울·수도권에서 광주·호남 지역, 대구·경북 지역, 부산·경남 지역까지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법률자문단과 함께 디자인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 수행기관 :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KODFA)

구분	접수일	주요내용	담당위원
1	2016. 04. 01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인 보호조치나 서면계약 없이 창작결과물을 모두 넘겨 창작결과물의 사용제한을 주장 불가)	김종대 변리사
2	2016. 04. 05	디자인 용역비 관련 (미지급 용역비의 청구방법)	이경현 변호사
3	2016. 04. 06	계약 관련 기타	이경현 변호사
4	2016. 04. 11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정식으로 이미지를 구입한 후 사용하였으나 이용약관을 잘못 이해하여 이미지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금액을 지불함을 모르고 사용한 사안)	이경현 변호사
5	2016. 04. 15	지식재산권 관련(도용)	이경현 변호사
6	2016. 04. 15	디자인 용역비 관련(민사소송절차) 계약 관련	이경현 변호사
7	2016. 04. 15	지식재산권 관련(디자인공지증명제도)	이경현 변호사
8	2016. 04. 19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이경현 변호사
9	2016. 04. 19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관련(일방해지 침해)	이경현 변호사
10	2016. 04. 22	지식재산권 관련(도용)	김종대 변리사
11	2016. 04. 26	디자인 용역비 관련(민사소송절차) 계약 관련	이경현 변호사
12	2016. 04. 26	디자인 용역비 관련(미지급)	이경현 변호사
13	2016. 04. 27	디자인 용역비 관련 계약 관련(의무이행 여부)	이경현 변호사
14	2016. 04. 27	계약 관련(계약범위 해석)	이경현 변호사
15	2016. 04. 29	지식재산권 관련(도용)	김종대 변리사
16	2016. 04. 29	지식재산권 관련(도용)	김종대 변리사
17	2016. 05. 03	지식재산권 관련(도용)	이경현 변호사
18	2016. 05. 03	지식재산권 관련(도용)	김종대 변리사

구분	접수일	주요내용	담당위원
19	2016. 05. 17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이경현 변호사
20	2016. 05. 30	지식재산권 관련(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관련	이경현 변호사
21	2016. 06. 21	디자인용역비 관련 (계약서 없이 계약체결 후 용역비 미지급) 계약 관련	이경현 변호사
22	2016. 06. 23	지식재산권 관련(이미지 사용범위)	이경현 변호사
23	2016. 06. 23	계약관련(무리한 요구)	이경현 변호사
24	2016. 06. 23	계약관련(결과납품(원본파일)형태 문의)	이경현 변호사
25	2016. 06. 30	계약관련(계약외 과도한 이행요구)	이경현 변호사
26	2016. 07. 27	디자인용역비 관련(고객의 불만족사유 중단)	이경현 변호사
27	2016. 07. 28	디자인용역비 관련 계약관련(고객의 불만족사유 중단)	이경현 변호사
28	2016. 08. 16	지식재산권 관련(침해자에 대한 대응)	이경현 변호사
29	2016. 09. 06	기타(주식회사 대주주의 책임)	이경현 변호사
30	2016. 09. 08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이경현 변호사
31	2016. 09. 12	디자인용역비 관련(용역비 미지급)	이경현 변호사
32	2016. 10. 05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이경현 변호사
33	2016. 09. 30	디자인 용역비 관련(용역비 미지급)	이경현 변호사
34	2016. 10. 20	지식재산권 관련(아이디어 모방)	이경현 변호사
35	2016. 11. 04	디자인용역비 관련(용역비 미지급)	이경현 변호사
36	2016. 11. 16	계약 관련(이미지 사용계약)	이경현 변호사
37	2016. 11. 17	지식재산권 관련(특허 문의)	김종대 변리사
38	2016. 11. 21	계약 관련 (이미지 사용계약에서 이미지 사용 범위에 관한 착오)	이경현 변호사
39	2016. 11. 22	계약 관련 (이미지 사용계약에서 이미지 사용 범위에 관한 착오)	이경현 변호사
40	2016. 11. 22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김우탁 노무사
41	2016. 11. 22	개인회사 설립시, 소재지 변경 가능여부 문의	이경현 변호사
42	2016. 11. 23	계약 파기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	이경현 변호사
43	2016. 11. 24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 교육) 외에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지 문의	김우탁 노무사

구분	접수일	주요내용	담당위원
44	2016. 12. 01	등록특허 및 등록디자인 침해에 관한 대응방법 문의	김종대 변리사
45	2016. 12. 01	계약서 양식 검토 요청	이경현 변호사
46	2016. 12. 06	디자인용역비 관련(부당한 기간연장)	이경현 변호사
47	2016. 12. 06	계약관련 (발주처의 컨펌지연으로 계약기간 초과된 경우, 법적문제 발생하는지 문의)	이경현 변호사
48	2016. 12. 08	디자인용역비 관련(고객의 변심에 의한 일부해지)	이경현 변호사

□ 수행기관 : (재)광주디자인센터

구분	접수일	주요내용	담당위원
1	2016. 05. 25	지식재산권 관련 (디자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	장재원 변호사
2	2016. 05. 25	세무회계관리 관련(재무제표 관리)	류문선 세무사
3	2016. 05. 26	지식재산권 관련 (디자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	이용우 변리사
4	2016. 07. 13	지식재산권 관련(특허 관리)	이용우 변리사
5	2016. 07. 13	지식재산권 관련(상표등록 및 브랜드명 보호)	이용우 변리사
6	2016. 07. 13	세무회계관리 관련(재무제표 관리)	류문선 세무사
7	2016. 07. 14	지식재산권 관련(권리확보 및 특허출원)	이용우 변리사
8	2016. 08. 16	지식재산권 관련 (입찰에 선정되지 않은 지재권 보호)	장재원 변호사
9	2016. 08. 23	계약 관련(계약서 검토 및 임금 미지급)	장재원 변호사
10	2016. 08. 23	지식재산권 관련(특허 출원에 관한 자문)	이용우 변리사
11	2016. 08. 23	계약 관련(일방적 계약 해지에 관한 법적보호)	장재원 변호사
12	2016. 08. 23	세무회계관리 관련(재무제표 관리)	류문선 세무사
13	2016. 08. 23	지식재산권 관련(특허 출원에 관한 자문)	이용우 변리사
14	2016. 08. 24	계약 관련(라이센스 관련 판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재원 변호사
15	2016. 08. 29	계약 관련(임금 미지급)	장재원 변호사
16	2016. 09. 07	지식재산권 관련 (미등록 디자인제품의 해외전시회 출품 시, 저작권 보호 방안)	장재원 변호사

구분	접수일	주요내용	담당위원
18	2016. 09. 07	지식재산권 관련 (미등록 디자인의 저작권보호, 흡사한 디자인의 타 기업과 마찰)	이용우 변리사
19	2016. 09. 08	지식재산권 관련 (디자인 등록에 대한 절차 문의)	이용우 변리사
20	2016. 09. 08	기업운영관련 (법인화에 관한 자문)	류문선 세무사
21	2016. 09. 08	기업운영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벤처기업 등록 및 특허, 실용신안)	이용우 변리사
22	2016. 09. 08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넷 판매중인 미등록 디자인의 저작권보호, 디자인 도용 대처방안)	이용우 변리사
23	2016. 09. 09	세무회계관리 관련 (재무제표 작성 및 자금운영 방안)	류문선 세무사
24	2016. 09. 09	지식재산권 관련 (디자인 도용에 대한 대응 방법)	이용우 변리사
25	2016. 09. 09	세무회계관리 관련 (재무제표 작성 및 자금운영 방안)	류문선 세무사
26	2016. 09. 09	기업운영관련 (법인화 및 기업구조에 관한 자문)	류문선 세무사
27	2016. 09. 09	지식재산권 관련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이용우 변리사
28	2016. 09. 13	세무회계관리 관련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관리 자문)	류문선 세무사
29	2016. 09. 19	계약관련(계약서 작성 및 임금 미지급)	장재원 변호사
30	2016. 09. 20	세무회계관리 관련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관리 자문)	류문선 세무사
31	2016. 09. 21	지식재산권 및 계약관련 (국내외 디자인 도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임금 미지급)	장재원 변호사
32	2016. 09. 29	계약관련 (임금 미지급)	장재원 변호사
33	2016. 10. 25	계약관련 (임금 미지급)	장재원 변호사
34	2016. 10. 25	세무회계관리관련 (회계관리 및 세금절세 방안)	류문선 세무사

□ 수행기관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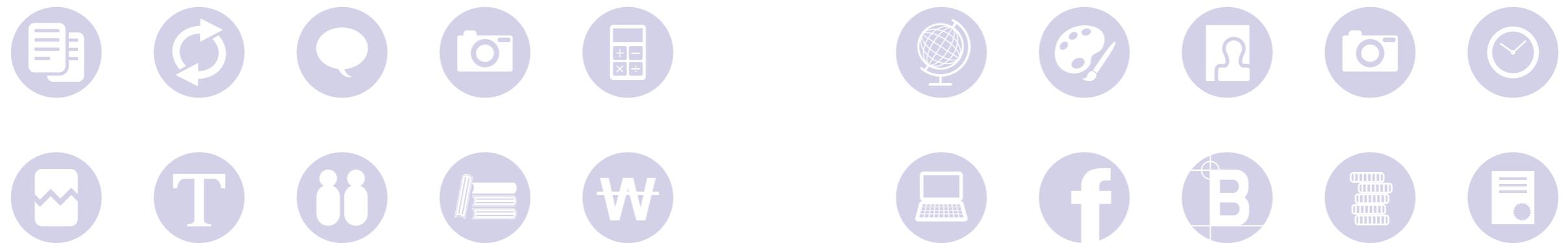
구분	접수일	주요내용	담당위원
1	2016.07.12	특허 관련 분쟁	주대원 변리사
2	2016.07.26	상표등록 관련 분쟁	송정부 변리사
3	2016.08.10	계약 문제	강나단 변호사
4	2016.08.17	계약 문제	박준혁 변호사
5	2016.08.17	저작권 문제	주대원 변리사
6	2016.08.17	디자인 시안물 무단사용 분쟁	송정부 변리사
7	2016.08.18	계약 문제	박준혁 변호사
8	2016.08.18	회계부분 자문	김봉철 회계사
9	2016.08.18	디자인권 등록 문제	주대원 변리사
10	2016.08.19	회사 노무 관련 문의	김희억 노무사
11	2016.08.19	저작권 분쟁 문제	주대원 변리사
12	2016.08.22	상표권 등록 문의	송정부 변리사
13	2016.08.23	저작권분쟁 문제	송정부 변리사
14	2016.08.23	법인전환 관련 문의	김봉철 회계사
15	2016.08.24	저작권 관련 문의	송정부 변리사
16	2016.08.26	상표권 소송 문제	주대원 변리사
17	2016.09.12	디자인 예산편성에 관한 건	김봉철 회계사
18	2016.09.19	디자인 저작권 관련 문의	주대원 변리사
19	2016.09.19	디자인 인력 관리 부분 문의	김희억 노무사
20	2016.09.19	저작권 관련 분쟁 문의	주대원 변리사
21	2016.09.19	저작권 관련 분쟁 문의	송정부 변리사
22	2016.09.19	계약 관련 문의	박준혁 변호사
23	2016.09.19	폰트 저작권 관련 문의	송정부 변리사

구분	접수일	주요내용	담당위원
24	2016.09.19	폰트 저작권 관련 문의	주대원 변리사
25	2016.09.19	디자인 무단 사용 시 법적 조치에 대한 문의	송정부 변리사
26	2016.09.21	계약관련 문의	박준혁 변호사
27	2016.10.07	초상권 관련 저작권 범위에 대한 문의	주대원 변리사
28	2016.10.07	상표등록 가능성 검증 문의	주대원 변리사
29	2016.10.07	상표등록 가능성 검증 문의	송정부 변리사
30	2016.10.07	상표등록 가능성 검증 문의	주대원 변리사
31	2016.10.07	상표등록 가능성 검증 문의	주대원 변리사
32	2016.10.19	개인사업자에서 신규 법인 개설시 개인저작권의 소유율 이전 관련문의	주대원 변리사
33	2016.10.21	디자인 도용 관련 문의	주대원 변리사
34	2016.11.01	상표등록 가능성 검증 문의	주대원 변리사
35	2016.11.01	상표등록 가능성 검증 문의	주대원 변리사
36	2016.11.01	디자인 도용관련 분쟁	주대원 변리사
37	2016.11.01	사업비 예산 소진 관련 문의	김봉철 회계사
38	2016.11.02	계속되는 디자인 변경요청에 따른 해결 방법 문의	박준혁 변호사
39	2016.11.02	계약 및 저작권 관련 문의	송정부 변리사
40	2016.11.03	이미지 저작권 관련 문의	송정부 변리사
41	2016.11.09	투자관련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강나단 변호사
42	2016.11.09	저작권 신청서 작성방법 문의	주대원 변리사
43	2016.11.11	라이센스 등록 비용 문의	송정부 변리사
44	2016.11.14	해외 디자인 등록 문의	주대원 변리사
45	2016.11.22	상표 등록 가능성 문의	주대원 변리사
46	2016.11.28	디자인 무단사용 관련 문의	박준혁 변호사

□ 수행기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구분	접수일	주요내용	담당위원
1	2016. 06. 02	브랜드네이밍 출원신청 등록 반려 손해배상	김일성 변리사
2	2016. 06. 15	저작권 관련분쟁, 인력(연봉 급여 등)	손정우 변호사
3	2016. 06. 24	실용실안 등록	정병홍 변리사
4	2016. 06. 24	디자인권 등록	정병홍 변리사
5	2016. 06. 27	계약문제	김은지 변호사
6	2016. 07. 05	폰트저작권	김은지 변호사
7	2016. 07. 12	카피도용	김은지 변호사
8	2016. 07. 15	이미지 관련 배상문제, 특허	김은지 변호사
9	2016. 07. 25	알공예 전시용 아크릴박스 특허	이상영 교수
10	2016. 07. 29	이미지저작권 문제	김은지 변호사
11	2016. 08. 22	저작권 관련분쟁	손정우 변호사
12	2016. 08. 22	계약 불이행	손정우 변호사
13	2016. 08. 22	예산문제	손정우 변호사
14	2016. 08. 24	특허(지적재산권)	김준수 변리사
15	2016. 08. 25	납품잔금 문제	손정우 변호사
16	2016. 08. 25	인쇄물 검수확인 문제	손정우 변호사
17	2016. 08. 26	자사제품 중국카피 문제	김준수 변리사
18	2016. 08. 29	해외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회계	김태우 실장님
19	2016. 08. 29	납품된 디자인 건에 대한 의뢰자의 지속적인 클레임	손정우 변호사
20	2016. 09. 01	출산휴가 관련 노무	최태열 노무사
21	2016. 09. 01	사업 확장에 따른 세무관련 문의	김영범 회계사
22	2016. 09. 01	계약금액 지불문제	성희원 법무사
23	2016. 09. 12	손해배상, 퇴직금문제	손정우 변호사
24	2016. 09. 25	디자인피해 대응방법, 디자인 출원 방법 및 관리	이상영 교수
25	2016. 09. 2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문제	김영범 회계사
26	2016. 09. 25	외부디자이너 디자인 용역비 지급문제	성희원 법무사
27	2016. 10. 04	디자인 용역비 문제	손정우 변호사
28	2016. 10. 10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등)관련 문의	김일성 변리사
29	2016. 10. 10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등)관련 문의	김일성 변리사
30	2016. 10. 10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등)관련 문의	김일성 변리사

구분	접수일	주요내용	담당위원
31	2016. 10. 12	계약, 용역비 문제	손정우 변호사
32	2016. 10. 17	디자인도용	손정우 변호사
33	2016. 10. 25	특허 관련 등록출원	박지호 변리사
34	2016. 10. 26	판매 매장 계약 시 법인 계약 관련 세무	전문식 회계사
35	2016. 10. 26	사업자금 관리 관련 문제	전문식 회계사
36	2016. 10. 26	부가세 및 기타 회계 관련 문의	전문식 회계사
37	2016. 10. 26	사무실 계약 및 직원 보수 관련 세무문제	전문식 회계사
38	2016. 10. 26	펀딩수익금 관련 처리방안	전문식 회계사
39	2016. 10. 26	사업비 관리 통장관련 문의	전문식 회계사
40	2016. 10. 26	인테리어 관련 회계처리	전문식 회계사
41	2016. 10. 27	노무 관련 문제	최태열 노무사
42	2016. 10. 28	원피스에 대한 디자인 및 특허등록	김일성 변리사
43	2016. 10. 28	상표등록 및 디자인등록	김일성 변리사
44	2016. 10. 28	디자인 도용대응방안 및 디자인등록	김일성 변리사
45	2016. 10. 28	주얼리 디자인 등록 및 상표 출현	김일성 변리사
46	2016. 10. 28	상표출현, 이미지 저작권 문의	김일성 변리사
47	2016. 10. 28	디자인 등록 문의	김일성 변리사
48	2016. 10. 28	상표등록 및 도용 대응방안	김일성 변리사
49	2016. 10. 28	실용실안, 디자인 등록	김일성 변리사
50	2016. 10. 28	상표출현 등 지재권 관련문의, 도용대응방안	김일성 변리사
51	2016. 10. 28	상표등록 가능여부 및 향후방안	김일성 변리사
52	2016. 10. 28	의류 관련 특허, 실용실안 문의	김일성 변리사
53	2016. 10. 28	로고 디자인 도용 및 해외 상표권 출현 문의	김일성 변리사
54	2016. 10. 28	상표등록 및 도용문제	김일성 변리사
55	2016. 10. 28	계약문제 및 계약불이행	손정우 변호사
56	2016. 11. 02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 문제	김준수 변리사
57	2016. 11. 03	디자인용역비 미지급문제	김은지 변호사
58	2016. 11. 03	디자인용역비 미지급문제	김은지 변호사
59	2016. 11. 04	인쇄비 지급문제	손정우 변호사
60	2016. 11. 04	용역비 문제	손정우 변호사
61	2016. 11. 04	디자인 용역비 및 계약 문제	손정우 변호사
62	2016. 11. 07	노무문제	최태열 노무사
63	2016. 11. 18	상표등록 문의	정병홍 변리사



부록

디자인권리보호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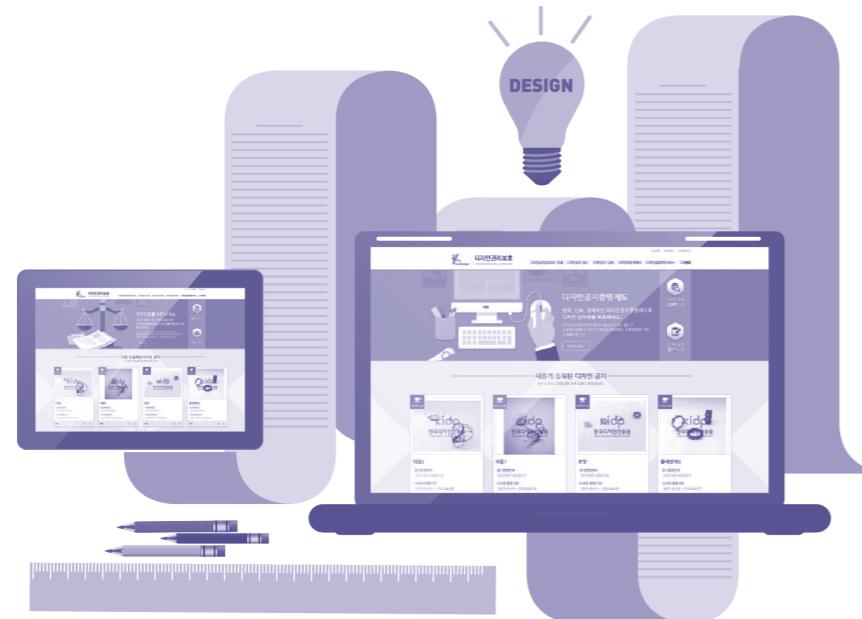
- A BETTER LIFE BY DESIGN
-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 디자인 피해지원센터/분쟁조정위원회
- 디자인공지증명제도
- 디자인용역 대가기준 수립
- 디자인권리보호제도

A BETTER LIFE BY DESIGN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은 2016년을
디자인권리보호제도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디자인권리보호제도는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훌륭한 제도임에도
홍보부족과 기준 거래방식을 고수하려는 산업계의 관행으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KIDP는 금년부터 디자인권리보호제도 확산 전담 부서를 두고, 표준계약서 활용기업에는 KIDP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중소기업청, 지역
디자인센터 및 디자인 관련 협회들과 협력하여 디자인권리보호제도 설명회 개최, 디자인 피해 사례
수집 및 해결 등 디자인권리보호제도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 수요기업과 디자인 공급기업이 서로 원활하는 동반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적정한 디자인 대가 및 거래 당사자 간
명확한 권리와 책임을 위한 디자인 표준계약서!



디자인업계의 열악한 경영 환경개선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4종을
개발·보급(산업부 고시: 2013.6.13.)하였습니다. 디자인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략개발 PD

| 전화 | 031-780-2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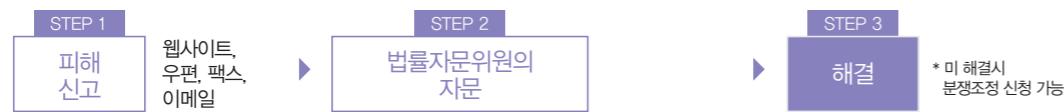
| 이메일 | gungho@kidp.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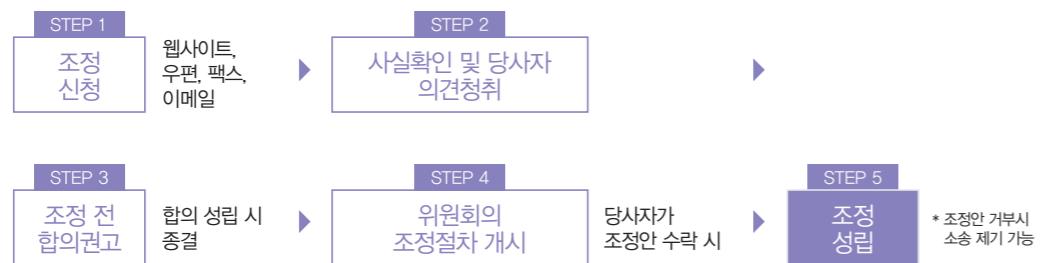
디자인 피해지원센터 / 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 피해? 디자인 분쟁?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디자인산업에 특화된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에 문의하세요!

▶ 피해신고 절차



▶ 분쟁조정 절차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며,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문의처 | 피해신고-(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 전화 | 1577-4964 | 이메일 | kofadsn@hanmail.net

| 문의처 | 본점|조경시철-한국디자인홀원 감사윤리실 | 전화 | 031-780-2016 | 이메일 | prunv@kidp.or.kr

디자인공지증명제도

편리, 신속, 경제적인 디자인공지증명제도로
디자인 창작권을 보호하세요!

▶ 신청절차 (<http://publish.kidp.or.kr>)



디자이너(디자인기업)의 창작의욕 고취와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디자인에 대한 창작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디자인공지증명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 증명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공지증명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출원’을 해야 함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략개발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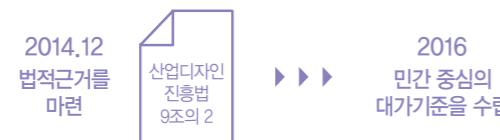
|전화| 031-780-2253

| 이메일 | gungho@kidp.or.kr



디자인용역 대가기준 수립

실효성 있고 디자인산업에 효용가치가 높은
디자인용역 대가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디자인용역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의 부재로 디자인 창작물에 대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2014년 12월 대가기준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산업디자인진흥법
9조의 2)를 마련하였고, 기반이 되는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까지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고 디자인산업에 효용가치가 높은 디자인용역 대가기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략개발 PD

| 전화 | 031-780-2253

| 이메일 | gungho@kidp.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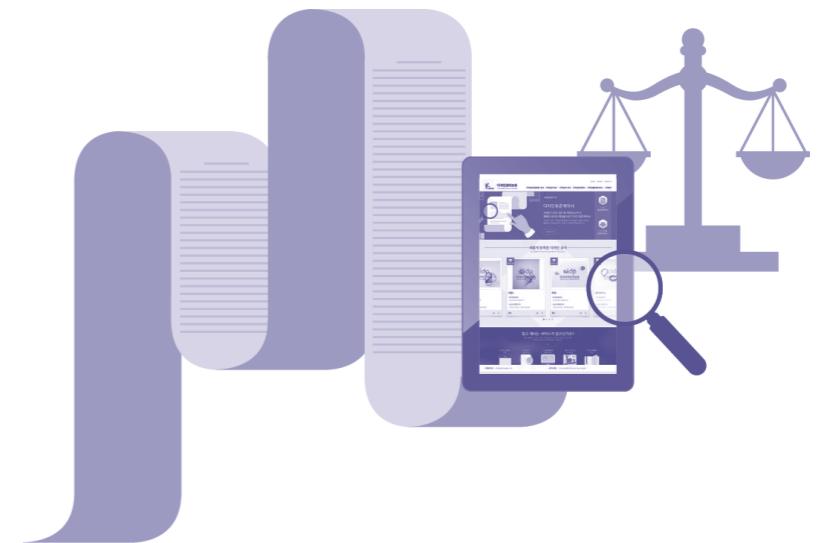


디자인권리보호제도

디자인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디자인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운영, 디자인용역 대가기준 수립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일부 개정(2015.12.22.)하여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디자인권리보호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 <http://publish.kidp.or.kr>



2016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본지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작한
「2016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이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인 쇄 | 2016년 12월

발 행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발 행 | 2016년 12월

집 필 진 | (사)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재) 광주디자인센터

(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재) 부산디자인센터

